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⑧ 조세지출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⑧ 조세지출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8 조세지출

총괄 | 정문종 조세분석심의관

기획·조정 | 김경신 세제분석과장
이영숙 세수추계과장

집필 | 채은동 최천규 김효경 세제분석과 경제분석관
태정림 백경엽 강민지 김세화 세수추계과 경제분석관

지원·편집 | 이하영 행정실무원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시리즈는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788-3778 rtsa@assembly.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⑧ 조세지출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7. 5.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조세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서 재정정책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 역량을 제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통일문제 등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세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공평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기여하면서, 건실한 재정운용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부터 조세정책 연구의 기초가 되는 ‘조세의 이해와 쟁점’시리즈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조세개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총 9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세의 제도일반, 행정·정책, 통계 그리고 조세현안에 대한 논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최근 지방주민의 공공 서비스 확대 요구 증가로 지방재정 및 지방세가 중요해 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세편’을 신규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세 세수확충논의를 고려하여 해외의 지방세목 사례와 과세체계를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한편 국제 주요세목 편에서는 2017년도 개정 세법령을 반영하여 주요 지표를 업데이트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경조정세 논의, EU의 부가가치세 실행계획 보고서, OECD 회원국의 BEPS 시행논의 등 해외 동향과 제도변화 추이를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근로·자녀 장려금 제도개선 사항, 법인세 실효세율 개념 및 현황 등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이슈를 추가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의원님들의 세제관련 입법 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양한 조세정책연구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바람직한 조세정책이 구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6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Contents

I. 개 요

1. 조세지출제도 의의	3
2. 조세지출제도 연혁	6
가. 시기별 특징	6
나. 제도개선 연혁	7
다.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11
3. 조세지출 운용현황	13
가. 전체 현황	13
나. 예산분류기준별 현황	15
다. 세목별 현황	18
라. 주요 항목별 현황	19
마. 일몰연도별 현황	21

II.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운용현황

1. 개관	25
2. 소득세	29
가. 보험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29
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31
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34
라. 자경농지 ·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36
마. 자녀세액공제	39
바. 교육비 세액공제	42

사.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44
아. 연금계좌세액공제	47
자. 의료비 세액공제	49
차.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51
카. 조합 등 예탁금 · 출자금 조세특례	53
타.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56
파. 자녀장려세제(CITC, Child Tax Credit)	58
하. 경로우대자 소득공제	60
거. 비과세종합저축(舊 노인 · 장애인 생계형저축 비과세)	62
너. 장애인 추가공제	64
더.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	65
3. 법인세	67
가. R&D비용 세액공제	67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69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舊임시투자세액공제)	71
라.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73
4. 부가가치세 등	77
가.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77
나. 농 · 축산 · 임업용 기자재에 부가세 영세율	79
다. 신용카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80
라. 농 · 임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82
마.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83
바.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85
사.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87
아. 장애인 · 환자수송 ·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88
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89

Ⅲ. 최근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1. 최근동향	93
2. 주요 논의 사항	94
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94
나. 조세지출의 일몰규정 제도화	95
다. 조세특례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 필요	96
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	97

Ⅳ. 일몰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1. 2017년 일몰도래 항목	101
2. 2018년 일몰도래 항목	103
3. 2019년 일몰도래 항목	106
4. 일몰규정 없는 항목	107

Ⅴ. 조세특례평가 결과

1. 2015년 조세특례 사전·사후평가 결과	113
가. 사전평가(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113
나. 사후평가(조세특례심층평가)	113
2. 2016년 조세특례 사전·사후평가 결과	116
가. 사전평가(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116
나. 사후평가(조세특례심층평가)	116

표 목차

[표 1] 조세지출(비과세 · 감면)제도의 특성	4
[표 2] 주요국의 조세지출 비중 비교	6
[표 3] 2015년도 조세특례평가 결과	9
[표 4] 2016년도 조세특례평가 결과	10
[표 5] 2017년 조세특례평가 대상	10
[표 6] 국가별 조세지출 평가기준	12
[표 7]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추이: 2010~2017년	15
[표 8]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2017년	16
[표 9] 조세지출 주요 항목 현황: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17
[표 10] 조세지출 상위 30개 항목	19
[표 11] 조세지출 일몰연도별 운용 현황	21
[표 12] 세목별 조세지출 주요항목	25
[표 13] 조세지출 상위 30개 주요항목의 감면액 규모 추이(계속)	27
[표 14] 2016년 조세지출 정비의 세수효과 비교1): 행정부 vs. NABO	93
[표 15]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추이: 근거 법률별, 2000~2015년	97
[표 16]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개별 항목별 감면 현황: 2015년	98

그림 목차

[그림 1] 국세감면액 및 지방세감면액 추이: 1998~2017년	13
[그림 2] 국세감면율(NABO 추계) 추이: 2008~2017년	14
[그림 3]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추이: 2008~2017년	18



I. 개요

1. 조세지출제도 의의	3
2. 조세지출제도 연혁	6
3. 조세지출 운용현황	13



I. 개요

1. 조세지출제도 의의

- 우리나라는 조세지출을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정의¹⁾
 - 관련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 자료 공표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예산안과 함께 발표)²⁾
 - 지방세 비과세·감면 : 안전행정부, 「지방세통계연감(舊 지방세정연감)」³⁾
 - 조세지출 지정요건 : 조세지원의 특정성, 제도의 폐지가능성
 - 지정 주체 : 기획재정부
 - 관련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5조의3
 - 지정요건이 기획재정부 재량사항에 맡겨져 있고, 하위법령에 명확한 지정요건이 없는 등 조세지출 기준이 모호
- 외국의 경우, 1967년 미국 재무부 차관보 Stanley S. Surrey가 조세제도 중에서도 재정지출 성격을 띠는 조세특례제도를 “조세지출(tax expenditure)”로 최초 정의
 - 미국 재무부에서 1967년부터 조세지출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1974년부터는 의회법에 따라 조세지출을 연간 예산의 한 부분으로 보고 그 목록과 조세감면액 현황을 표로 정리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 미국에서 조세지출예산서가 의회에 제출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하여 1990년 중반에는 최소 16개국에서 조세지출보고서제도를 도입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캐나다, 일본 등

- 1)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조세지출예산서」는 예산안 첨부자료로서 동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 접속하여 의안명에 ‘예산안’으로 검색하여 접속하면 PDF 형식의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3)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www.mospa.go.kr)에서 원문 다운로드 가능



- 독일은 조세지출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미국보다 10여년 앞선 1954년부터 조세특례를 보조금제도의 하나로 인식하고 정리
 - 독일은 1967년부터 재정지출 보조금과 함께 조세지출 현황을 정리한 보조금보고서(Subventionsbericht)를 2년에 한 번씩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⁴⁾
 - 분야별로 보조금지원과 조세특례지원을 함께 정리
- OECD는 1995년 조세지출(비과세 · 감면) 제도의 개념을 '조세체계상의 일반표준(norm)인 기준조세체계*'를 벗어나는 항목'으로 규정
 - *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란 세목별 과세대상, 세율 구조, 과세구간, 과세단위, 과세기간, 회계 관행에 따른 규정, 행정효율을 위한 규정, 국제조세 규약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
 - 1996년 조세지출의 특성을 특정성, 대체가능성, 폐지가능성 등으로 정리

[표 1] 조세지출(비과세 · 감면)제도의 특성

	내 용
특정성	조세지출은 특정 산업 및 경제활동에 혜택을 제공하여야 함
대체가능성	조세지출은 조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는 상관없는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목표는 조세가 아닌 다른 정책수단으로도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입증될 수 있어야 함
폐지가능성	특정 조세지출을 없애는 것이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하여야 함
기타	조세지출은 규모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기준인 기준조세제도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해당 세목의 범위가 넓어야 하며, 조세지출 혜택을 크게 상쇄시킬 수 있는 항목이 동일 조세제도 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함

자료: OECD, 「Tax Expenditures: Recent Experience」, 1996

- 다만, 기준조세체계의 개념이 명확하더라도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간 합의된 기준이나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⁵⁾

4) Harry A. Shannon, The Tax Expenditure Concept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 Comparison, 33 Tax Notes 201, 1986

5) 김종면, "기준조세체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재정포럼 제13권 제8호 통권 제146호, 2008.8. pp.6-18 참고하여 재작성

- 미국 : 조세지출의 관리범위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증여세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다른 세목에도 감면제도가 있으나 조세지출에 포함시키지 않음(조세지출보고서는 예산분석서 19장에 수록)
 - 캐나다 : 조세지출을 기준조세체계에서 벗어나는 모든 조세특례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개인 · 법인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비세 포함
 - 호주 : 1980년부터 매년 조세지출보고서를 예산안의 부록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특정 행위나 특정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조세지출로 정의
 - 영국 : 부가가치세 관련 영세율 · 우대세율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은 연구 · 개발비 세액감면 · 공제(R&D Credit)가 유일
 - 독일 : 연방제국가로 지방세 비중(2010년 전체의 48.1%)이 높고, 주로 민간기업 및 산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에 초점을 두며 기업의 R&D 관련 조세지출제도는 지방정부에서 운용하여 국세 기준상의 조세지출에는 미포함
 - 프랑스 : 표준조세를 적용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세수입을 감소시키는 조세특례를 조세지출로 정의하며, 특정 조세감면이 30년 이상 존속되면 기준조세체계의 일부로 간주하여 조세지출에서 제외
 - 스웨덴 : 조세수입이 사전에 정의된 기준조세체계로부터 도출된 금액(미실현 조세수입)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조세지출로 간주하므로, 조세지출의 범위를 비과세 · 감면으로 가장 넓게 보고 있음
- OECD에서는 2010년 각 국가가 집계하는 조세지출 항목을 제출받아 동일기준 하에 조세지출 규모를 재산출한 바 있음
- 다만, 국가마다 조세체계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운영방식, 조세감면액 추정기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지출의 범위는 국가마다 상이하여, 국가별 조세지출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특히 OECD 기준에 해당되는 조세지출 항목을 집계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감면액 규모가 과소추계 가능성이 있음⁶⁾
 - 2010년 이후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없는 실정

6) 미국은 주식 양도차익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조세지출로 집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한 제도(중소기업 주식 우대세율 적용)에 대해 조세지출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영국은 식료품의 영세율 적용이 전체 조세감면액의 16.0%를 차지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또한 면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조세지출에 미포함



[표 2] 주요국의 조세지출 비중 비교

(단위: %)

	캐나다 2004	독일 2006	한국 2006	네덜란드 2006	스페인 2008	영국 2006	미국 2008
총조세 대비	59.36	8.81	24.73	9.95	28.16	38.84	58.59
GDP 대비	6.94	0.74	2.48	2.00	4.55	12.79	5.97

자료: OECD,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0

2. 조세지출제도 연혁⁷⁾

가. 시기별 특징

- 우리나라 조세지출제도는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수단으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역기능을 수정·보완하는 제도들이 최근에 도입
 - (1960~1970년대)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전략적으로 선정된 특정 산업으로의 투자 유인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조세지출제도의 과도한 남발로 인해 세수 확보의 불안정성 및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점 제기
 - (1980년대)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세지출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기능별 지원제도로 전환
 - (1990년대) 1995년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세지원제도가 금지됨에 따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별 조세지원이 강화
 - 한편, 과표 양성화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세계 최초로 도입
 - (2000년대) 연구개발 및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이 확대되는 반면 전체적인 조세감면액 규모를 억제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제도가 도입
 - 1999년부터 조세지출보고서 형태로 전체 및 조세지출항목별 감면액 통계가 국회에 보고되기 시작
 - (2010년대) 기존 조세지출보고서가 조세지출예산서로 개편되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013년부터 조세지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시행

7)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제2권 제3관 지방세·재산과세·조세지원제도」, 2012.12 참고하여 재작성

- 201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이미 정책목표를 달성한 제도의 경우 그 조세감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 예고⁸⁾
- 2015년부터 신규 도입되는 조세지출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발의안(국회에 산정책처 시행예정)과 정부안(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모두 사전평가를 받음

나. 제도개선 연혁

■ 조세지출의 감면규모나 수혜대상이 명백히 노출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제도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

- 조세지원의 경우 일몰규정이 있으나, 일몰연장이 관례화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나 필요성보다는 조세혜택을 받는 이해당사자의 조세저항이 제도개정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
 - 국세감면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세입기반을 잠식할 우려
- 특정계층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출예산사업과 중복 지원된 조세특례 항목도 존재
- 실효성 없이 생성·보존되는 조세지원제도들이 여전히 많음
 - 실적 없이거나 추정근란인 조세지출항목수: 2012년 45개 → 2014년 44개
- 조세지출제도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조세회피(loophole) 발생 가능
 - 세법지식·세무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신규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납세협력비용을 유발

■ 조세지원제도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운용상의 제도가 도입·발전

- 조세감면규제법의 제정(1965년) 및 한시적 체제화(1976년)
- 조세감면규제법의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1998년)
-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2010년) 및 성과관리제도(2013년)

■ 1965년 조세감면규제법 제정

- 통일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조세지원을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 제3조에 열거된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함
- 조세감면규제법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원은 지속적으로 항구화 및 확대

8) 기획재정부,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2013.3.26.



- 1976년 조세감면규제법을 5년 단위의 한시법 체제로 전환
 - 일정한 시한이 지나면 법 자체가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여 조세지원이 항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다만, 제도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계속하여 연장·운영
-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
 - 조세특례 제도별로 적용시한(일몰시한)을 해당조문에 명기하였고, 1999년부터 행정부가 조세지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 조세지출 항목 및 감면액 규모(2년치), 감면 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세지출 보고서가 1999년 처음으로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
- 2010년 조세지출예산제도⁹⁾ 도입
 - 국가재정법¹⁰⁾에 따라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성을 높이고 조세지출에 관한 정보를 예산심사 과정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 도입
 - 국민의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이 선정되어, 국세감면 사전제한제 · 조세감면 평가서 및 건의서 작성제도 등이 시행되고 기존 조세지출보고서가 조세지출예산서로 개편
 - 조세지출보고서: 전년실적, 금년잠정 등 2개 연도 감면액 집계
 - 조세지출예산서: 전년실적, 금년추정, 내년추정 등 3개 연도 감면액 집계
 - 다만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국회에서의 예산안 및 세법관련 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주요 재정정보들이 예산서에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
- 2013년 조세지출성과관리(외부전문기관 평가) 도입
 - 1차 중앙부처 자체평가, 2차 외부전문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평가를 수행하여 전문기관 평가결과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세법개정안을 작성
 - 2013년 : 평가(188개) → 미흡판정(44개) → 폐지제안(19개) → 폐지(17개)
 - 2013년 외부전문기관 평가 : 전체 188개 중 아주미흡 10개, 미흡 34개
 - 정부 세법개정안 : 미흡판정을 받은 44개 중 19개 항목 폐지 제안
 - 국회심사(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 17개 항목 폐지

9) 조세지출로 인해 세입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실상 직접적인 예산지출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예산으로 부름

10)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어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고, 2010년 회계연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음

■ 2015년부터 '조세특례 심층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시행

- 기존 조세지출에 대한 재정소요액을 집계하는 수준의 관리에서, 특정 조세특례 제도에 대한 경제적·정책적 효과 등 심층적인 분석 실시

■ 2015년의 경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3건 및 심층평가 14건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신규 조세특례 1건에 대해서만 세법개정안에 반영
- 심층평가 결과, 평가대상 14건 중 2건은 폐지, 8건은 일몰연장, 4건은 축소·조정이 권고되었고 세법개정안에도 동일하게 반영

[표 3] 2015년도 조세특례평가 결과

항 목		규모(억원)	세법개정안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총 3건)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5,500	신설
	2. 중소기업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신설	추정곤란	미반영
	3. 보훈관련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세제지원	추정곤란	
심층평가 (총 14건)	1.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303	폐지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327	
	1. 농수협등의 출자금,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9,105	축소, 일몰연장
	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양도소득세 감면	1,253	
	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340	
	4.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추정곤란	
	1.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82	단순 일몰연장
	2.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142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	1,630	
	4.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574	
	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333	
	6.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659	
	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404	
	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특례평가 방법 연구」, 2016.11, 22~26쪽



- 2016년의 경우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2건 및 심층평가 6건 실시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신규 조세특례 1건에 대해서만 세법개정안에 반영
 - 심층평가 결과, 평가대상 6건 모두 일몰연장이 권고되었고 세법개정안에도 동일하게 반영

[표 4] 2016년도 조세특례평가 결과

항 목		규모(억원)	세법개정안 반영
예비타당성 조사 (총 2건)	1.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우대	693	미반영
	2.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574	
심층평가 (총 6건)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8,163	축소, 일몰연장
	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1,423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1,199	
	4. 재활용폐자원 등 VAT 과세특례	5,780	단순 일몰연장
	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684	
	6.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1,074	확대, 일몰연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특례평가 방법 연구」, 2016.11, 22~26쪽

- 2017년 4월 현재,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2건 및 심층평가 8건 시행 중

[표 5] 2017년 조세특례평가 대상

구분	조세지출 항목
예비타당성조사 (2건)	1. 중소기업 지출 특허비용 세액공제 2.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
심층평가 (8건)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4. 공장, 본사 수도권밖 이전시 법인세 감면 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6.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등 세액공제 7.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8. 청년고용 증대세제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2017.3.28., 13쪽

다.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 국가별로 조세지출제도 사전평가 및 사후관리 · 평가 제도가 상이
 - 국가마다 신규조세지출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수효과, 경제성, 사회적 영향 등 관리수준에서 차이를 보였음
 - 일몰도래하는 항목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부분의 국가는 운용되는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평가
- 조세지출제도 사전평가
 - 신규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미국(비용추계), 영국(조세영향분석서), 독일(입법평가제도) 등이 사전평가체계를 갖추고 있음
- 조세지출제도 관리 및 사후평가
 - 관리 :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우리나라와 같이 조세지출 관련 항목명과 감면액 규모를 집계하여 발표
 -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세특례(102개)와 보조금(62개)의 재정소요 규모를 함께 집계(독일 재무부, “보조금보고서”)
 - 미국은 일몰연도별로도 조세지출항목 집계하여 발표
 - 사후평가 : 미국 · 영국은 비정기적으로 평가를 시행하는 반면, 독일은 주요 항목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평가 · 관리
 - 미국은 위원회에서 요구한 연간 5~10개의 조세지출에 대해서만 정부책임처(GAO)에서 평가보고서를 작성
 - 독일은 감면액 규모가 큰 20개 주요항목 중심으로 조세지출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수행(2013년 기준, 전체 102개 중 27개 평가)
- 조세지출 평가기준은 국가별 또는 조세지출 특징별로 차이가 있으나, 세수효과 및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 경제성, 정책성, 형평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음
 - OECD : 조세지출의 분야와 목적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함
 -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경우 국가의 특성에 따라 조세지출 평가기준이 상이
 - 기본적으로 세수효과, 경제적 효과성(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표 6] 국가별 조세지출 평가기준

	내 용
한국	경제성(비용-편익분석 또는 비용-효과분석) 정책성(정책 일관성, 운용상 위험요인 등) 형평성(소득계층간, 대·중소기업간, 지역간 등)
OECD	조세지출의 분야와 목적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하였음 - 근로중대 분야: 노동공급, 소득분배, 세수효과, 재정지출과의 비교 등 - 주택 분야: 조세지원 근거, 효율성, 소득분배, 세수효과 등
미국	효과성(목표달성도), 납세자 순응비용,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왜곡 등
영국	비용-혜택·효과성·집행비용·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가부(可否)이기는 하나 중소기업 영향·탄소분석·양성평등·인종평등 등의 항목에 대해서도 평가
독일	감면액 규모, 투명성, 이론적 근거, 보조금 관련 제도와의 연관성, 효과성, 효율성 등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20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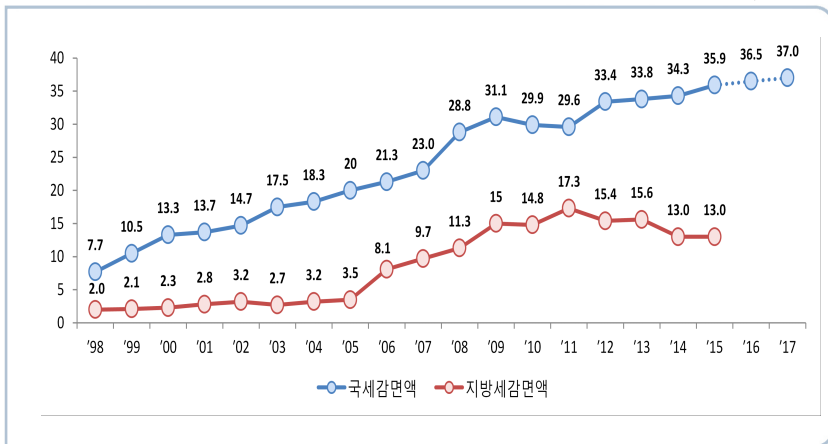
3. 조세지출 운용현황

가. 전체 현황

- 국세 비과세 · 감면을 지칭하는 조세지출액은 2016년 36.5조원, 2017년 37.0조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998년 7.7조원 규모이던 조세지출액은 2007년 23.0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8~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대규모 조세 감면을 실시함에 따라 감면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 2009년 31.1조원 규모이던 조세지출액은 기존에 집계되지 않던 4개 항목이 조세 지출에 추가되는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2년에 33조원 규모를 초과하였고,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며 2017년도 37.0조원 규모로 전망됨
- 지방세감면액 또한 1997년 2.0조원에서 2015년 13.0조원으로 증가

[그림 1] 국세감면액 및 지방세감면액 추이: 1998~2017년

(단위: 조원)



주: 국세감면액의 경우, 2012년 이후 기존에는 집계되지 않던 조세지출 4개 항목(총 4.0조원 규모)이 추가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6~2017년은 전망치임

자료: 기획재정부(국세감면액), 행정자치부(지방세감면액)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조세지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국세감면율^{*}을 살펴 보면, 2009년 이후 최근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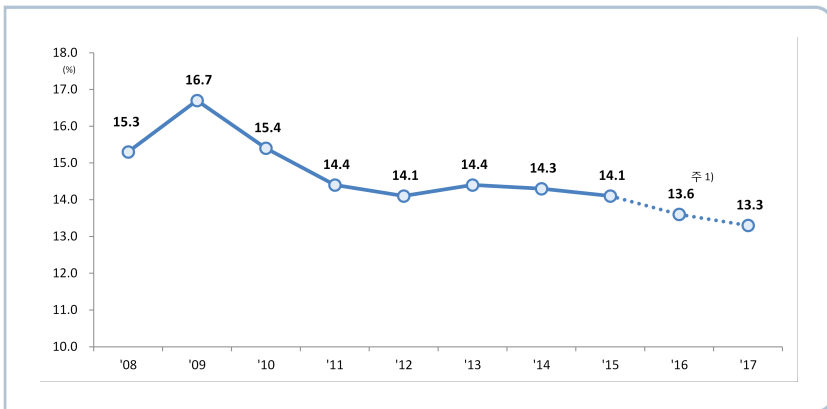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 100

- 국세감면율은 2008년 15.3%에서 2009년 16.7%로 증가한 이후 14% 내외 수준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13.3% 수준으로 전망

- 국세감면액 규모 통제를 위해 국세감면율에 대한 법정한도^{*} 제도가 시행중이며, 최근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¹¹⁾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 0.5%p

[그림 2] 국세감면율(NABO 추계) 추이: 2008~2017년



주: 1) 2016년도 국세감면율은 13.6%이나, 최근 발표된 국세수입 수납액(242.6조원)을 반영하여 재계산할 경우 13.1%이 될 것으로 추정됨

자료: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국세통계연보 자료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1)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추이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3.7	14.2	15.3	16.3	16.0	15.1	14.8	14.8	14.8	14.5

나. 예산분류기준별 현황

- 조세지출액 규모를 중앙정부의 총 재정지출(조세지출액+재정지출액)과 비교하면, 총 재정지출액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은 2010년 9.3%에서 2017년 8.5%로 하락 추세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더한 총 재정지출액은 2017년도 예산 기준으로 조세지출액 37.0조원과 재정지출액 400.5조원을 더한 437.5조원 규모
 - 조세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에도 총 재정지출액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이 하락세를 보인 것은, 재정지출이 조세지출 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
 - 2010~2017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조세지출액은 연평균 3.1% 증가한데 반해 재정지출액은 연평균 4.6% 증가

[표 7]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 추이: 2010~2017년

(단위: 조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망	2017 전망	연평균 증가율 ²⁾
조세지출액 ¹⁾	(A)	30.0	29.6	33.4	33.8	34.3	35.9	36.5	37.0	3.1%
재정지출액	(B)	292.8	309.1	325.4	349.0	355.8	384.7	398.5	400.5	4.6%
총 재정지출액 (C=B+C)		322.8	338.7	358.8	382.8	390.1	420.6	435.0	437.5	4.4%
총 재정지출액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 (A/C)		9.3%	8.7%	9.3%	8.8%	8.8%	8.5%	8.4%	8.5%	

주: 1) 2010~2011년 조세지출액은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에 발표된 수치에 2012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조세지출 4개 항목(총 4.0조원 규모)의 조세지출액(NABO 추계치)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값임

2) 연평균증가율은 2010~2017년 기준으로 계산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재정」, 2017, 국회예산정책처, p.8.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예산분야별로 조세지출액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 2017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총 재정지출액(조세지출액+재정지출액)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40.0%), 농림수산(20.2%), 사회복지·보건(10.1%) 순으로 높았으며, 그 외 분야의 경우 평균값인 8.5% 이하로 나타남
- 예산분류기준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사회복지·보건(14.6조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10.6조원), 농림수산(4.9조원) 등 3개 분야의 합계가 전체 조세지출액의 81.6%인 30.2조원 규모로,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표 8]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비교: 2017년

(단위: 조원 %)

	조세지출액		재정지출액		총 재정지출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액 비중 (A/C)
	(A)	전체 대비	(B)	전체 대비	(C=A+B)	전체 대비	
일반공공행정	2.3	6.3	63.3	15.8	65.6	15.0	3.6
공공질서 및 안전	—	—	18.1	4.5	18.1	4.1	—
외교·통일	0.0	0.0	4.6	1.1	4.6	1.1	0.0
국방	0.7	2.0	40.3	10.1	41.0	9.4	1.8
교육	1.3	3.4	57.4	14.3	58.7	13.4	2.2
문화 및 관광	0.0	0.0	6.9	1.7	6.9	1.6	0.0
환경	0.6	1.7	6.9	1.7	7.5	1.7	8.5
사회복지·보건 ①	14.6	39.5	129.5	32.3	144.1	32.9	10.1
농림수산 ②	4.9	13.4	19.6	4.9	24.5	5.6	20.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③	10.6	28.8	16.0	4.0	26.6	6.1	40.0
교통·물류 및 SOC	1.8	4.9	22.1	5.5	23.9	5.5	7.5
과학기술	0.0	0.0	19.5	4.9	19.5	4.5	0.0
합 계	37.0	100.0	400.5	100.0	437.5	100.0	8.5
주요항목 (①~③)	30.2	81.6	165.1	41.2	195.3	44.6	15.5

주: 재정지출액의 경우, R&D 분야는 '과학기술'로, SOC 분야는 '교통 및 물류', '통신', '국토 및 지역 개발'로,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사회복지·보건'으로 분류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재정 2017」, 2017, 국회예산정책처, p.12;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조세지출액 규모가 큰 항목들이 산업 · 사회복지 · 농림수산 · 보건 등의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2.5조원)가 가장 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1조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1.9조원) 등의 항목이 포함
- 사회복지 · 보건 분야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1.8조원), 자녀세액공제(1.4조원), 근로장려금(1.2조원), 연금계좌세액공제(1.0조원)등의 항목이 포함
- 농림수산분야는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6조원), 면세유 지원(0.9조원)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고, 보건 분야는 국민연금보험료 공제(2.5조원), 의료비 특별공제(0.9조원) 등 소득세 세액공제항목이 포함

[표 9] 조세지출 주요 항목 현황: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예산분류	세부 항목
산업 · 중소기업 및 에너지 (10.6조원)	• 농 · 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2조 5,172억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조 1,404억원)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조 9,190억원)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1조 6,273억원)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8,721억원) 등
사회복지 · 보건 (14.6조원)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2조 4,752억원)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1조 8,041억원) • 자녀세액공제(1조 3,598억원) • 근로장려금 지급(1조 2,452억원) • 연금계좌세액공제(1조 859억원) • 의료비 특별공제(9,171억원) •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9,023억원) 등 • 개인기부금 세액공제(7,347억원) • 법인기부금 손급산입(6,215억원) 등
농림수산 (4.9조원)	• 농업 · 축산업 ·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 5,762억원) • 농 · 임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9,022억원) • 자경농지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8,329억원) •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7,467억원) 등

주: 괄호 안의 숫자는 2017년 조세지출액 전망치임

자료: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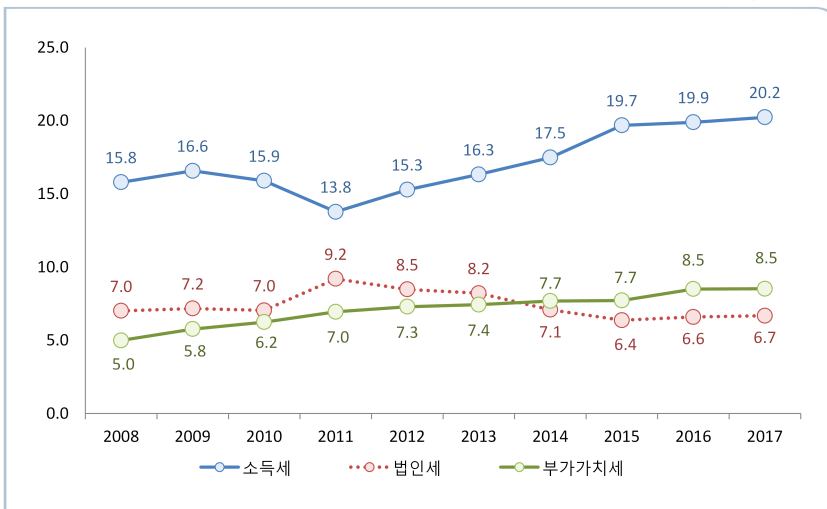
다. 세목별 현황

■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을 기점으로 소득세는 증가 추세인 반면 법인세는 하락하는 추세이며, 부가가치세는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

- 소득세 조세지출액은 전체 조세지출 중 가장 큰 규모로서, 근로장려금 확대 및 자녀장려금 도입 등에 따라 2008년 15.8조원에서 2017년 20.2조원으로 확대
 - 근로장려금: 2008년 0.4조원 → 2017년 1.2조원(전망)
- 법인세 조세지출액은 2008~2010년 7.0조원 규모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투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1년에는 9.2조원 규모로 증가, 이후 경기침체 및 조세지출 축소 · 정비기조로 인해 감소 추세
 - 임시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2008년 2.7조원 → 2017년 0.9조원(전망)
- 부가가치세 조세지출액은 농 ·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감면액 규모가 물가상승에 따라 함께 증가하면서 완만하게 증가
 - 농 ·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2008년 1.0조원 → 2017년 2.5조원(전망)

[그림 3]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추이: 2008~2017년

(단위: 조원)



주: 2008~2011년 조세지출액은 기존 조세지출예산서에 발표된 수치에 2012년부터 새롭게 추가된 조세지출 4개 항목(총 4.0조원 규모)의 조세지출액(NABO 추계치)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값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주요 항목별 현황

- 2015년도 조세지출액을 기준으로 조세지출 상위 30개 항목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조세지출 규모가 큰 항목들이 전체 조세감면을 주도
 - 감면 규모 순서로 상위 30개 항목의 2015년도 조세지출액은 총 30.8조원으로 전체 감면액 35.9조원의 85.8%를 차지
- 둘째, 조세지출 주요항목의 절반 이상이 일몰규정 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일몰 규정이 있는 항목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되어 옴
 - 상위 30개 항목 중 16개 항목은 일몰 규정 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 항목은 제도 전체 또는 제도 내 일부 항목에만 일몰 규정이 존재
 - 예를 들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한하여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을 규정(조특법 제10조 제1항 1호)
- 셋째, 소득세 조세지출 항목의 감면 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 감면 규모가 크게 나타남
 - 전체 30개 항목 중 소득세 조세지출 항목은 총 17개로 2015년 실적액 기준 16.7조원이 감면됨(전체 조세지출액의 54.2%)
 - 법인세 조세지출 항목은 총 4개 항목으로 2015년 실적액 기준 5.1조원이 감면됨(전체 조세지출액의 18.9%)
 - 부가가치세 조세지출 항목은 총 7개로 2015년 실적액 기준 6.8조원이 감면되었고(전체 조세지출액의 21.9%), 그 외 기타 조세지출 항목은 총 2개로 감면액은 1.5조원 규모(전체 조세지출액의 5.0%)로 나타남

[표 10] 조세지출 상위 30개 항목

(단위: 억원)

주요 항목		세목	규정	일몰기한	감면액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소득세(3%), 법인세(97%)	조특법§10	일부내역 2018년	28,158
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소득세	소득법§59의4①	-	24,112
3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법§84①	-	21,990



(단위: 억원)

주요 항목		세목	규정	일몰기한	감면액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세	조특법§126의2	2016년	17,889
5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소득세	소득법§51의3	-	16,150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세(59%), 법인(45%)	조특법§7	2017년	16,090
7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조특법§105①5	2017년	14,514
8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가법§46	2018년	14,188
10	8년이상 자경·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세	조특법§69, 조특법§69의2	2018년 (축사 7년)	13,183
10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교통세(59%), 부가세(25%) 등	조특법§106의2①	2018년	13,152
11	자녀세액공제	소득세	소득법§59의2	-	12,784
12	교육비 특별공제	소득세	소득법§59의4③	-	11,531
13	근로장려금	소득세	조특법§100의2-26	-	10,625
14	연금저축 소득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소득세	소득법§59의3	-	9,580
1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소득세(29%), 법인세(98%)	조특법§26	2017년	8,954
16	의료비 특별공제	소득세	소득법§59의4②	-	8,852
1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소득세	소득법§2 조 비목	-	8,154
18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 과세특례	소득세	조특법§8의2-28	2018년	7,666
19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	소득세	소득법§59의4④	-	7,031
20	자녀장려세제	소득세	조특법§100의27-31	-	6,555
21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조특법§105①1	-	6,158
22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공제 특례	부가가치세	조특법§108	2018년	6,135
23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법인세	법인법§25	-	4,917
24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소득세	소득법§51	-	3,869
2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	조특법§88의2	2019년	3,647
26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조특법§105	2018년	2,734
27	장애인 추가공제	소득세	소득법§51①2	-	2,699
28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소득세	소득법§52④⑤	-	2,498
29	장애인, 환자수술,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개별소비세	개소법§18①3	2018년	2,315
3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부가가치세	조특법§106의7	2018년	1,875
전체 조세지출액		소득세 (17개)	법인세 (4개)	부가가치세 (7개)	기타 (2개)
359,017 (100.0%)		307,949 (85.8%)	166,769 (54.2%)	58,119 (18.9%)	67,594 (21.9%)
					15,467 (5.0%)

주: 1) 감면액은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2015년도 실적액

2) 괄호 () 안은 전체 조세지출액 대비 비중(%)임

자료: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일몰연도별 현황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세지출 항목은 총 243개이며 이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35.4조원 규모로 집계¹²⁾
 - 일몰 규정이 존재하는 조세지출 항목은 총 164개로 이들 항목의 감면액은 총 17.1조원 규모¹³⁾
 - 각 연도별 일몰 예정 항목은 2017년 52개, 2018년 94개, 2019년 17개, 2020년 1개 등 총 164개
 - 일몰 규정 없이 운용되는 총 79개 조세지출 항목의 감면액은 총 18.3조원 규모이며, 평균 감면액이 2,313억으로 일몰이 규정된 항목의 평균 감면액 1,045억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1] 조세지출 일몰연도별 운용 현황

(단위: 개, 억원, 년)

	누계 (A)	일몰 예정 항목				일몰 없는 항목(B)	합계 (A+B)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항목수	164	52	94	17	1	79	243
(전체 대비 비중)	(67.5%)	(21.4%)	(38.7%)	(7.0%)	(0.4%)	(32.5%)	(100.0%)
총 조세감면액	171,325	46,727	118,992	5,606	—	182,713	354,038
평균 감면액	1,045	899	1,266	330	—	2,313	1,457

주: 1) 동 자료는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2016년 세법개정에 따른 조세지출제도 신설 및 폐지를 반영하였으며, 경과규정 항목(45개, 4,959억원)은 집계에서 제외

2) 2015년 감면액 실적을 기준으로 집계

3) 추정이 곤란하거나 실적이 없는 항목들은 감면액을 0으로 처리

4) 조세지출 항목 중 일부 항목에 일몰이 규정된 조세지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은 일몰 예정 항목으로 분류함. 이러한 기준 차이에 따라 집계 기간별로 일몰 예정 항목 수 등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2)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항목 274개를 기준으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신설 항목(14개)을 추가하고, 경과조치 항목(45개)을 제외하고 집계한 것임

13)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지출 항목 중 일부에만 일몰이 규정된 경우(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를 일몰 예정항목으로 분류하였음. 조세지출 전체 항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 III장을 참조

Ⅱ.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운용현황

1. 개관	25
2. 소득세	29
3. 법인세	67
4. 부가가치세 등	77

Ⅱ.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운용현황

1. 개관

- 2015년 실적¹⁴⁾ 기준 전체 감면액의 85.8%를 차지하는 주요 30개 조세지출제도를 중심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순으로 운용현황 및 주요 쟁점 정리
 - 소득세 17개(조세감면액 합계 16.7조원), 법인세 4개(5.8조원), 부가가치세 등 9개(8.3조원) 등 30개 항목(30.8조원)을 대상으로 함
 - 세목 안에서는 감면액 규모 순으로 정리

[표 12] 세목별 조세지출 주요항목

(단위: 억원)

세목	주요 항목	2015년 조세지출액
소득세 (17개)	가. 보험료 세액공제	24,112
	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17,889
	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16,150
	라.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13,183
	마. 자녀세액공제(舊 자녀양육비공제 등)	12,784
	바. 교육비 세액공제	11,531
	사. 근로장려세제	10,625
	아. 연금계좌세액공제(舊 연금저축 소득공제)	9,580
	자. 의료비 세액공제	8,852
	차.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8,154
	카.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조세특례	7,666
	타.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7,031
	파. 자녀장려세제	6,555
	하. 경로우대자 소득공제	3,869
	거. 비과세종합저축(舊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 비과세)	3,647
	너. 장애인 소득공제	2,699
	더.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	2,498
	소계(소득세)	166,825

14) 2016~2017년 조세지출액도 집계되고 있으나 추정치임을 감안 2015년 실적을 기준으로 함



세목	주요 항목	2015년 조세지출액
법인세 (4개)	가. R&D비용 세액공제	28,158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¹⁾	16,090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舊임시투자세액제)	8,954
	라.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4,917
	※ 외국납부세액공제 ²⁾	(39,467)
	소계(법인세, 단 외국납부세액공제 미포함)	58,119
부가 가치세 등 (9개)	가.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21,990
	나.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세 영세율	14,514
	다. 신용카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4,188
	라.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3,152
	마.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6,158
	바.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6,135
	사.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734
	아.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315
	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1,875
	소계(부가가치세 등)	83,061
주요항목 30개 합계		308,005
274개 조세지출액 합계		359,017

주: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감면규모 비중(56.0%)이 상당하나 제도 특성상 법인세로 분류

2)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준조세체계로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출 관리항목이 아님. 2015년 조세지출액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상의 수치를 인용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3] 조세지출 상위 30개 주요항목의 감면액 규모 추이(계속)

(단위: 억원)

주요 항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6,867	11,597	9,444	9,782	9,478	14,080
2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7,889	8,443	11,554	13,492	13,791	15,771
3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n/a	n/a	n/a	n/a	n/a	n/a
4 신용카드 소득공제	6,223	8,308	8,966	9,812	10,465	12,506
5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n/a	n/a	n/a	n/a	n/a	n/a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7,234	9,094	9,356	4,914	9,003	10,215
7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7,882	7,475	8,763	10,292	11,606	13,627
8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7,546	7,748	5,435	4,991	5,893	6,992
10 8년이상 자경농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1,630	3,840	4,677	4,448	7,737	9,915
10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면세유)	12,083	13,200	14,488	14,487	17,779	18,976
11 자녀세액공제	141	141	146	2,444	2,445	3,335
12 교육비 특별공제	5,357	5,100	6,577	7,804	8,036	8,812
13 근로장려금	n/a	n/a	n/a	n/a	n/a	n/a
14 연금저축 소득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15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528	13,019	18,134	25,439	20,681	18,247
16 의료비 특별공제	2,524	2,768	3,315	3,799	3,974	3,972
1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5,324	6,604	4,833	6,012	6,742	4,020
18 조합 등 예탁금, 출자금 과세특례	3,323	3,242	2,622	2,154	2,769	n/a
19 개인 기부금 특별공제	4,022	4,702	4,448	5,067	5,045	6,054
20 자녀장려세제						
21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2,938	2,175	2,697	2,266	1,956	2,111
22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공제 특례	3,045	3,497	4,464	5,018	5,846	5,243
23 법인 기부금의 손금산입	3,551	4,083	4,530	5,295	5,390	6,670
24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1,706	3,533	3,880	4,113	4,318	7,567
25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776	595	770	940	1,175	n/a
26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607	3,309	2,784	2,010	1,504	2,531
27 장애인 추가공제	343	587	717	665	1,563	2,678
28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특별공제	1,208	1,134	1,538	2,225	2,687	3,487
29 장애인 한자녀 농업·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402	336	489	427	1,582	544
3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도입	759	767	782
30개 항목 감면액 합계	100,149	124,530	134,627	148,655	162,232	178,13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3] (계속)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연평균 증가율
1	16,460	15,535	18,571	23,341	25,567	28,850	27,860	28,158	20,802	21,404	7.9%
2	20,285	21,269	20,268	18,259	19,087	21,569	24,139	24,112	25,210	24,752	7.9%
3	n/a	n/a	n/a	n/a	20,691	22,490	20,550	21,990	24,409	25,172	4.0%
4	15,171	18,934	18,405	11,729	11,697	13,720	15,708	17,889	19,383	18,891	7.7%
5	n/a	n/a	n/a	n/a	11,890	13,632	14,913	16,150	17,094	18,041	8.7%
6	12,239	12,793	11,978	10,953	12,829	12,640	13,812	16,090	18,205	19,190	6.7%
7	15,198	15,814	14,117	14,117	14,136	13,155	15,717	14,514	14,933	15,762	4.7%
8	8,451	10,036	12,325	13,831	14,405	13,667	13,888	14,188	15,883	16,273	5.3%
9	9,992	18,779	16,542	13,107	12,569	12,757	13,618	13,183	8,262	8,375	11.5%
10	14,801	15,287	15,406	15,349	15,237	15,065	14,523	13,152	9,734	9,022	-1.9%
11	6,481	7,072	6,335	5,329	5,467	5,723	5,868	12,784	13,365	13,598	35.6%
12	11,001	12,299	12,749	11,773	10,736	10,393	10,803	11,531	11,289	11,312	5.1%
13	n/a	4,537	4,344	4,020	6,140	5,618	7,765	10,625	11,000	12,452	13.5%
14				도입	7,838	8,998	9,184	9,580	10,939	10,859	6.7%
15	21,148	20,032	17,700	27,371	21,243	17,727	11,349	8,954	8,580	8,721	1.9%
16	5,966	6,881	7,340	5,989	5,945	6,567	7,113	8,852	9,129	9,171	9.0%
17	4,929	5,708	5,563	6,224	7,593	8,648	8,459	8,154	8,858	9,023	3.6%
18	n/a	n/a	n/a	5,665	7,943	8,934	8,943	7,666	7,205	7,467	5.5%
19	8,516	7,818	7,958	8,758	8,774	9,447	9,865	7,031	7,703	7,347	4.1%
20							도입	6,555	6,250	6,033	-4.1%
21	2,354	2,769	2,322	2,055	2,192	2,131	6,297	6,158	6,523	6,910	5.9%
22	5,496	5,188	6,090	6,732	6,653	6,494	6,547	6,135	5,730	5,737	4.3%
23	6,540	6,398	6,080	8,421	8,512	9,861	6,944	4,917	5,930	6,215	3.8%
24	8,327	8,400	3,830	2,989	3,284	3,497	3,857	3,869	4,124	4,103	6.0%
25	n/a	n/a	n/a	3,992	4,290	4,434	4,100	3,647	3,367	3,484	10.5%
26	1,742	1,511	2,446	2,752	2,358	2,148	2,616	2,734	5,967	3,948	6.2%
27	3,196	3,412	3,227	2,814	2,390	2,461	2,557	2,699	2,814	2,881	15.2%
28	4,686	3,256	2,732	2,362	2,392	2,251	2,320	2,498	2,946	3,152	6.6%
29	691	291	2,720	2,251	2,684	2,257	2,578	2,315	1,565	2,279	12.3%
30	694	478	1,411	1,524	1,513	1,551	1,657	1,875	1,905	1,897	7.9%
합계	204,364	224,497	220,459	231,707	276,055	286,685	293,550	307,949	309,061	313,425	6.4%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소득세

가. 보험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
- 신설연월일: 1994.12.22.
- 감면내용
 - 주요내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율: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부보험료의 12% 세액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5%)
 - 공제한도: 보장성 보험,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각각 연 100만원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근로자
- 예산분류: 보건 - 보건의료(91)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득세	7,889	8,443	11,554	13,492	13,791	15,771	20,285	21,26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20,268	18,259	19,087	21,569	24,139	24,112	25,210	24,75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4.12.22.
 - 의료보험법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연 50만원까지 소득공제
- 1999.8.31.
 -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만원으로 확대
- 2000.12.29.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소득공제를 한도 연 100만원으로 신설
- 2002.12.18.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를 연 100만원으로 확대(장애인 보험료 공제는 별도)
- 2014.1.1.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는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및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12%)로 전환(「소득세법」 제59조의4 신설)
- 2015.5.13.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세액공제율을 15%로 확대 (2014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

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21조의2
- 신설연월일: 1999.8.3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공제를 적용
*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가능선: 총 급여의 25% 초과분
 - 계산방식: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25%) × 공제율
공제율이 낮은 항목부터 높은 항목 순으로 공제가능선을 채우고, 공제가능선을 초과한 금액부터 다음의 공제율 적용
 - 공제율
 - 신용카드(전통시장분 제외, 대중교통비* 제외) 15%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철도(택시는 아님)
 - 이외(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전통시장분, 대중교통비) 30%
 - 공제한도: 기본 최대 300만원 + 추가 최대 200만원
 - 기본: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하되, 순차적으로 총급여 수준별로 한도 수준을 차등화
 - 추가: 전통시장사용분(100만원), 대중교통비사용분(100만원)

총급여액	공제한도(기본)		
	~2016년	2017년	2018년
~7천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1억2천만원		300만원	250만원
1억2천만원~		200만원	20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
 - 「여신전문금융업법(§2)」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 「전자금융거래법(\$2)」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 확인금액 포함)사용금액
 - 공제 제외항목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법인 관련 비용
 - 신용카드 등의 변칙 사용행위
 - 신규자동차 구입비 등(다만, 2017년부터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은 포함)
 - 지로방식으로 납부한 금액(학원비 포함)
 - 일몰기한: 2018.12.31.까지
- 수혜자: 근로소득자
 - 예산분류: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14)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소득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소득세	346	2,027	6,223	8,308	8,966	9,812	10,465	12,50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소득세	15,171	18,934	18,405	11,729	11,697	13,720	15,708	17,889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19,383	18,891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시행시기	적용대상	공제 가능선	공제율				공제 한도	일몰 기한
			신용	체크 (직불)	현금 영수증	기타 (특공제)		
1999.9~	신용, 직불	총급여의 10%	10%		-	-	300만원	'02.11.30
2001.8~	"	"	20%		-	-	500만원	"
2003~	학원 지로납부수강료 추가, 신규출고 자동차 구입액 제외	"	20%	30%	-	-	"	'05.11.30
2004~	기명식신불카드, 현금영수증 추가	"	20%			-	"	"
2005~	"	15%	"			-	"	"
2006~	"	"	15%			-	"	'07.11.30
2008~	기명식 전자화폐 추가	20%	20%			-	"	'09.12.31
2010~	"	25%	20%	25%	20%	-	300만원	'11.12.31
2012~	"	"	"	30%	"	30% (전통)	기본300 전통100	'14.12.31
2013~	학원 지로납부 수강료 제외	"	15%	"	30%	" 대중교통 추가)	기본300 전통100 대중100	"
2015~	"	"	15%	30% (일부 50%)		"	"	'16.12.31
2016~	연간 소득 10만원 이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액 포함	"	"	"		"	"	"
2017~	"	"	"	"		"	기본300 (급여별 차등적용) 전통100 대중100	'18.12.31

주: 1)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사용분의 경우, 결제수단(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상관없이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동 항목 사용분에 한해서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공제가 가능

2) 2014년 세법개정 결과, '14년 하반기 및 '15년 상반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이 각각 2013년 사용금액(50%)에 비해 증가한 경우 한시적으로 40% 소득공제를 적용

3) 2015년 세법개정 결과, '15년 하반기 및 '16년 상반기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이 각각 2014년 사용금액(50%)에 비해 증가한 경우 한시적으로 50% 소득공제를 적용

4) 2016년 세법개정 결과, 2018년까지 총급여 수준별로 공제한도를 200~300만원으로 차등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1조의3

■ 신설연월일: 2000.12.29.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 공제순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의 합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연금보험료는 후순위로 공제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국민연금 가입자

■ 예산분류: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89)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소득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11,890	13,632	14,913	16,150	17,094	18,041

주: 2013년에 발간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조세지출항목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여, 기획재정부는 2012년 이전 감면액 규모를 집계하지 않았음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0.12.29. 본조신설
 - 연금보험료 대상: 국민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 제외), 공무원 · 군인 · 사학 연금 등에 부담하는 기여금
- 2005.12.31.
 - 연금보험료 대상에 고용보험료 포함(단, 고용보험료와 연금저축금액의 합

산액이 300만원인 경우까지만 공제 허용)

- 2014.12.31.
 - 연금보험료 등 공제의 합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만큼 연금보험료 공제에서 제외함으로써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라. 자경농지·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 제69조의2(축사용지)
- 신설연월일: 1986.12.26.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업법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 감면
 - 공제율: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일몰기한: 없음(다만, 축사용지에 대해서는 2017.12.31.까지)
- 수혜자: 농지를 직접 경작한 거주자, 축산농가(폐업을 전제)
- 예산분류: 농림수산 - 농업농촌(101)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감면(양도소득세)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득세	1,630	3,840	4,677	4,448	7,737	9,915	9,992	18,77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16,542	13,107	12,569	12,757	13,618	13,183	8,262	8,37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86.12.26.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1998.12.28.
 - 기존 감면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 2001.12.29.
 - 도시계획법에 의해 주거·상업지역등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편입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전액감면 적용
- 2002.12.11.
 - 농업법인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함
- 2003.12.30.
 -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함
- 2004.12.31.
 - 기존 감면조건에는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했으나, 이를 “직접 경작”으로 개정하여 연속성과 관련한 감면조건을 완화
- 2005.12.29.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법인등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3년 이상”으로 예외로 함
- 2005.12.31.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이외의 토지를 농업법인등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조항 일몰폐지
- 2005.12.29.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법인등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함
- 2010.12.27.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토지의 양도관련 일몰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



- 2011.7.25.
 - 측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2013.1.1.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토지의 양도관련 일몰을 “2015년 12월 31일”로 연장
- 2014.2.21. (시행령 개정)
 - 자경기간 제외사유 신설: 근로소득(총급여) 및 사업소득(농·축산·임업 제외)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연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
 - 감사원 지적사항을 시행령에 반영
- 2015.2.3. (시행령 개정)
 - 거주지와 농지간의 거리를 기존 “직선거리 20Km 이내”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로 확대
- 2015.12.15.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토지의 양도관련 일몰을 “201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1명당 측사용지 한도를 990m에서 1,650m로 변경

마. 자녀세액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2(舊 소득세법 제51조, 제51조의2)
- 신설연월일: 1995.12.29.(자녀양육비 소득공제), 2006.12.30.(다자녀 추가소득공제), 2007.12.31.(출산입양 소득공제)
→ 2014.1.1.(자녀세액공제로 통합)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통한 출산 장려
 - 공제금액(아래 표 참조)
 - 기본공제: 자녀 1명당 1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합한 금액
 - 만6세이하공제: 6세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위탁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 출생입양공제: 해당연도에 출생한 직계비속 및 입양신고를 한 입양자에 대해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인 경우 70만원
 - 제한사항: 자녀장려금과 중복수혜 불가
 - 일몰기한: 없음
 - 자녀수별 세액공제액

(단위: 만원)

구분	자녀수별 세액공제액					
기본공제	자녀수	1	2	3	4	5
	공제액	15	30	60	90	120
만6세이하공제	자녀수	1	2	3	4	5
	공제액	-	15	30	45	60
출생입양공제	출생순위별 해당 자녀수	1	2	3	4	5
	공제액	30	80	150	220	2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수혜자: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 예산분류: 사회복지 - 보육, 가정, 여성(84)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소득세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141	141	146	2,444	2,445	3,335	6,481	7,072
자녀양육비공제	141	141	146	2,444	2,445	3,335	3,637	3,459
출산입양공제							'09도입	856
다자녀공제						'08도입	2,844	2,757
소득세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전체	6,335	5,329	5,467	5,723	5,868	12,784	13,365	13,598
자녀양육비공제	3,048	2,457	1,801	1,923	통합폐지	통합폐지		
출산입양공제	750	637	448	494	통합폐지	통합폐지		
다자녀공제	2,537	2,235	3,218	3,306	통합폐지	통합폐지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14.1.1.
 - 기존 6세이하공제, 출산입양공제, 다자녀공제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통합하여 자녀세액공제로 전환하되, 2013년 무상보육 확대 등을 이유로 6세이하공제 및 출산입양공제 관련 내용은 폐지하고 다자녀공제만 존속
- 2015.5.13.
 - 2015년 연말정산 사태로 인해 6세이하공제 및 출산입양공제 모두 재도입되고, 2014년 귀속소득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부칙 제13282호)
- 2016.12.20.
 - 출생·입양자녀에 대해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인 경우 70만원으로 세액공제 금액 인상

공제액	'96~'03	'04~'06	'07	'08	'09~'10	'11~'13	'14~'16
기존 자녀 관련 소득공제							
6세이하공제	50	100	100	100	100	100	폐지
출산입양공제				200	200	200	폐지
다자녀공제			50 ¹⁾	50	50	100~200 ²⁾	폐지
자녀세액공제							신설

주: 1) 둘째부터 소득공제 적용

2) 둘째는 100만원, 셋째부터는 200만원씩 소득공제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교육비 세액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9조4 제3항(구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 신설연월일: 1977.12.19.
- 감면내용
 -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없음)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15%
 - 공제한도
 - 근로자·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없음
 - 부양가족(영유아,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연 300만원
 - 부양가족(대학생) : 연 900만원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근로자
- 예산분류: 교육 - 교육일반(54)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득세	5,357	5,100	6,577	7,804	8,036	8,812	11,001	12,29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12,749	11,773	10,736	10,393	10,803	11,531	11,289	11,31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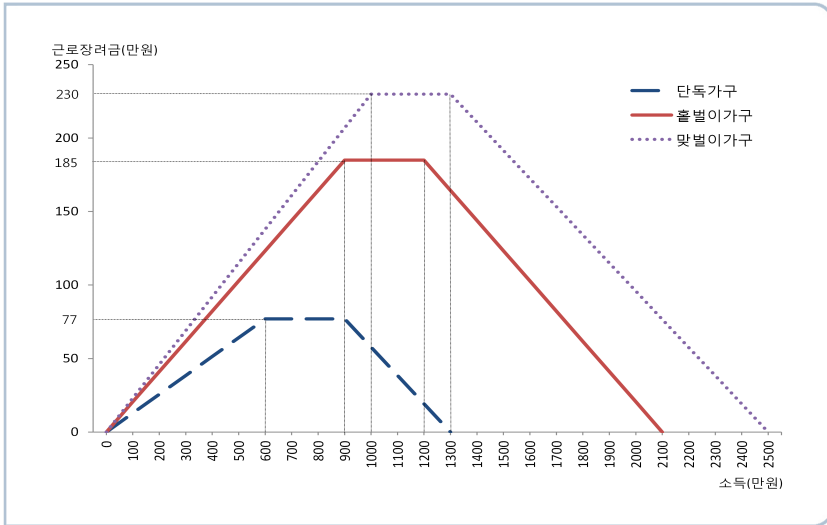
- 1994.12.12.
 - 거주자와 직계비속 등의 학교(유치원과 대학원 제외) 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에 대한 소득공제
- 1995.12.29.
 - 직계비속의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연 230만원, 유치원아 연 70만원으로 확대
- 1998.12.28.
 - 직계비속 등이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연 150만원으로 소득공제 설정
- 1999.8.31.
 - 직계비속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연 150만원, 취학전아동(학원 수강료 포함) 연 100만원으로 확대
- 2001.12.31.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150만원으로 설정
- 2002.12.18.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 연 500만원, 초·중·고등학생 연 200만원, 취학전아동 연 150만원으로 확대
- 2003.12.30.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 연 700만원으로 확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의 소득공제 한도 폐지
- 2008.12.26.
 -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 연 900만원, 초·중·고등학생 및 취학전아동 연 300만원으로 확대
- 2014.1.1.
 - 소득공제(100%)를 세액공제(15%)로 전환
 - 기존 조항(제52조)을 폐지하고, 「소득세법」 제59조의4를 신설



사.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 (제100조의2~제100조의13)
- 신설연월일: 2006.12.26.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저소득 근로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통상 추석전 9월 지급)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 장려금 지급
 - ①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부부가구), 수급자가 40세** 이상(지급연도 기준 2017년 이후)일 것
 - * 18세미만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제외),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부모가 없는 경우 손자 · 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
 - ** 연령기준 완화(2015년까지 60세 → 2016년 50세 → 2017년 40세 → 2018년 30세)
 - ②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 2,500만원 미만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 ③ 토지 · 건물 · 전세금 등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
(단,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시 장려금의 50%만 수급)
 - ④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국적 미보유자는 제외하나, 이 경우 한국 국적보유자와 혼인한 경우는 해당)
 - ⑤ 기타: 기초생활수급자(2015년부터 적용), 미혼모 또는 한부모 가정, 종교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가정 모두 수급 가능
 - 일몰기한: 없음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수혜자: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
- 예산분류: 사회복지 - 노동(86) -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기타감면(근로장려세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4,537	4,344	4,020	6,140	5,618	7,765	10,625	11,000	12,45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6.9.29.
 - 정부는 EITC 신설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2008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 2006.12.22.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현재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안에 대한 심사결과, EITC를 정부안 형태로 도입하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부결
- 2006.12.2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EITC의 법적근거 마련
 - 2009년: 부양자녀가 있고 연 소득 1,700만원 미만인 부부가구에 한해 최대 120만원의 근로장려금 최초 지급 (59만가구)
- 2012년(2011.12.31. 개정)
 - 부양자녀수별 차등지원 (70~200만원) 및 무자녀가구 추가(+24만가구)
 -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추가 (+5만가구)
 - 1주택자의 주택가격요건 완화 (5천만원 → 6천만원미만, +7만가구)
- 2013년(2013.1.1. 개정)
 - 60세 이상 단독가구 추가 (+14만가구)
- 2014년(2014.1.1. 개정)
 - 부양자녀별 차등지원에서 가구유형별 (단독가구, 부부가구) 차등지원으로 전환 (+7만가구)
- 2015년(자영업자 외에는 2014.1.1. 개정)
 - 자영업자 (2010.1.1. 개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지급대상에 추가
 - 1주택 보유자 주택가격요건 삭제 등 재산요건 완화
- 2016년(2014.1.1. 개정)
 - 50대 단독가구 추가 (기획재정부 26만가구 전망)
- 2017년
 - 40대 단독가구 추가 (기획재정부 24만가구 전망), (2014.1.1. 개정)
 - 주택요건 삭제(2016.12.20. 개정)
 - 급여액 10% 인상(2016.12.20. 개정)
- 2018년 예정(2017.4.18. 개정)
 - 30대 단독가구 추가

아. 연금계좌세액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舊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소득세법 51조의3 제1항 제2호)
- 신설연월일: 2000.12.28.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금계좌납입액중 다음의 금액을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5,500만원 이하): 15%
 - 이와: 12%
 - 공제한도: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연 400만원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총합: 연 700만원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
- 예산분류: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14)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7,838	8,998	9,184	9,580	10,939	10,859

주: 2013년에 발간된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부터 조세지출항목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여, 기획재정부는 2012년 이전 감면액 규모를 집계하지 않았음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0.12.29.
 - 조세특례제한법에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신설
 - 연금저축에 납입액 중 연 240만원까지 공제가능
- 2005.12.31.
 - 최대공제금액을 연 300만원으로 확대
- 2010.12.27.
 - 최대공제금액을 연 400만원으로 확대
- 2013.1.1.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연금저축 소득공제 폐지하고
 -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2호에 동일한 내용 신설
- 2014.1.1.
 - 소득공제(100%)를 세액공제(12%)로 전환하면서
 - 기존 조항을 폐지하고,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설
- 2014.12.13.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산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미적용
- 2015.5.13.
 -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을 15%로 인상
 - 2014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

자. 의료비 세액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舊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 신설연월일: 1977.12.19.
- 감면내용
 - 주요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당해연도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공제한도
 -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 · 장애인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한도없음
 - 그 외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근로자
- 예산분류: 보건 - 보건의료(91)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득세	2,524	2,768	3,315	3,799	3,974	3,972	5,966	6,881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7,340	5,989	5,945	6,567	7,113	8,852	9,129	9,171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4.12.12.
 -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 1999.8.31.
 - 소득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
- 2000.12.29.
 -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
- 2002.12.18.
 -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으로 확대
- 2003.12.30.
 - 거주자,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만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소득공제
- 2008.12.26.
 - 거주자, 경로우대자 및 장애인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를 700만원으로 확대
- 2014.1.1.
 - 기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15%)로 전환

차.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 신설연월일: 1994.12.22.
- 감면내용
 -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에서 비과세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근로사업자 및 사업자
- 예산분류: 보건 - 건강보험(92)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득세	5,324	6,604	4,833	6,012	6,742	4,020	4,929	5,7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5,563	6,224	7,593	8,648	8,459	8,154	8,858	9,02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4.12.22.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2013.1.1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한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경우, 그 단계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조항에서 삭제. 실질적으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법조항을 정비한 것임. 제 311회 국회 기획재정소위원회 회의록(조세소위원회), 2012.11.5., 19~20쪽)



카.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조세특례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제89조의3
- 신설연월일: 1975.12.22.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농민·어민 및 그 밖의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가입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혜택
 - 출자금: (한도 1천만원)
 - 2018년 12월 31일까지: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5% 세율 적용
 - 2020년 1월 1일 이후: 9% 저율과세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미합산
 - 예탁금: (한도 3천만원)
 - 2018년 12월 31일까지: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5% 세율 적용
 - 2020년 1월 1일 이후: 9% 저율과세하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미합산, 개인지방소득세 미부과
- 수혜자: 농협·수협·신협 등 조합, 조합원·회원 등
- 예산분류: 농림수산 - 농업, 농촌(101)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및 저율과세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득세	3,323	3,242	2,622	2,154	2,769	n/a	n/a	n/a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n/a	5,665	7,943	8,934	8,943	7,666	7,205	7,467

주: 2007~2010년의 경우, 비과세 · 감면이 적용되는 다수의 금융상품을 합산하여 조세지출액을 집계하여, 개별 항목에 대한 감면액 규모 미발표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0.12.29.
 - (출자금) 1인당 1천만원의 한도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
 - (예탁금) 1인당 2천만원의 한도로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00.1.1~'03.12.31), 5% 저율과세('04.1.1~'04.12.31) 및 세금우대저축 과세('05.1.1~) 신설
- 2003.12.30.
 - (예탁금)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일몰을 비과세('04.1.1~'06.12.31), 5% 저율과세('07.1.1~'07.12.31) 및 세금우대저축 과세('08.1.1~)로 확대
- 2006.12.30.
 -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09.12.31)을 신설
 - (예탁금)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일몰을 비과세('07.1.1~'07.12.31), 5%('10.1.1~'10.12.31) 및 9% 저율과세('11.1.1~)로 확대
- 2008.12.26.
 -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확대(~'12.12.31)
 - (예탁금) 1인당 3천만원의 한도로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일몰을 비과세('07.1.1~'12.12.31), 5%('13.1.1~'13.12.31) 및 9% 저율과세('14.1.1~)로 확대
- 2013.1.1.
 -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확대(~'15.12.31)
 - (예탁금)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한 일몰을 비과세('07.1.1~'15.12.31), 5%('16.1.1~'16.12.31) 및 9% 저율과세('17.1.1~)로 확대



- 2015.12.15.
 -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을 비과세(~'18.12.31), 5%('19.1.1 ~ '19.12.31) 및 9% 저율과세('20.1.1~)로 확대
 -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일몰을 비과세('07.1.1~'18.12.31), 5%('19.1.1 ~ '19.12.31) 및 9% 저율과세('20.1.1~)로 확대



타. 개인기부금 세액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舊 소득세법 제52조 6항)
- 신설연월일: 1981.12.3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대상금액: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총합에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
 - 공제율: 15%(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공제한도: 법정기부금(없음),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30%)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복지 · 문화 · 교육 · 종교 등 관련단체 및 기부자
- 예산분류: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89)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세액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득세	4,022	4,702	4,448	5,067	5,045	6,054	8,516	7,81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7,958	8,758	8,774	9,447	9,865	7,031	7,703	7,347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4.12.22.
 - 근로소득금액의 5%를 한도로 기부금(필요경비 제외) 소득공제



- 2000.10.23.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 제외)의 10%
- 2007.12.31.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20%로 확대
- 2009.12.31.
 -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의 경우 이월하여 공제
(법정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5년)
- 2010.12.27.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30%로 확대
- 2009.12.31.
 -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 3년으로 확대
- 2014.1.1.
 - 소득공제를 세액공제(15%, 단 3천만원 초과분은 25%)로 전환
- 2015.12.15.
 - 고액기부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완화(3천만원→2천만원)하고, 해당하는 세액공제율을 인상(2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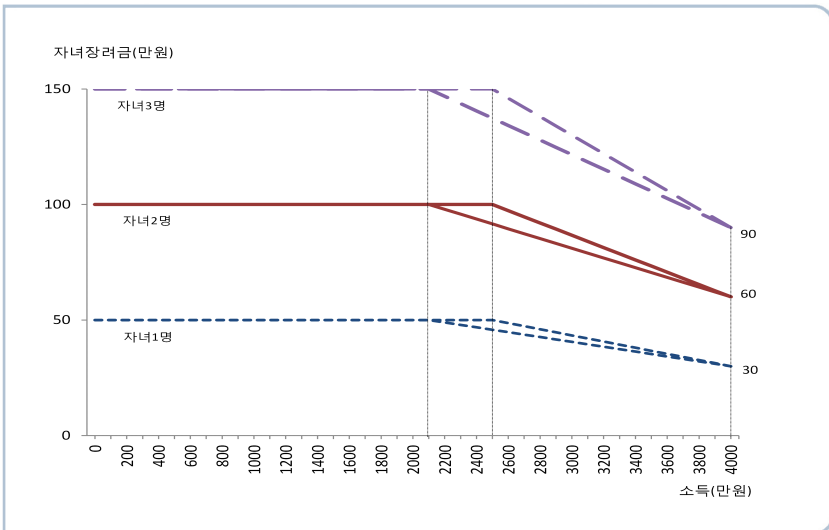
파. 자녀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4 (제100조의27~제100조의31)

■ 신설연월일: 2014.1.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저소득 근로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을 위해 세금환급방식으로 자녀 장려금을 지급(통상 추석전 9월 지급)
-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 장려금 지급
 - 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단, 생계급여수급자는 제외)
 -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시 제외),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부모가 없는 경우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 포함
 - ② 가구의 연간 총소득 합계 4,000만원 미만
 - ③ 토지·건물·전세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
 - (단, EITC와 달리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초과해도 장려금 전액 수급)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장려금 신청 연도 3월 기준)는 제외
-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저소득 근로소득자 및 종합소득자
- 예산분류: 사회복지 - 노동(86) - 근로조건보호 및 복지증진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기타감면(근로장려세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6,555	6,250	6,03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14.1.1.
 - 2015년 자녀장려세제 시행
- 2016.12.20.
 - 주택요건 삭제
- 2017.4.18.
 - 재산요건을 재산 합계액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



하. 경로우대자 소득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신설연월일: 1994.12.12.
- 감면내용
 - 주요내용: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1명당 기본공제 외에 연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는 종합소득자
- 예산분류: 사회복지 - 노인, 청소년(85)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소득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득세	1,706	3,533	3,880	4,113	4,318	7,567	8,327	8,4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3,830	2,989	3,284	3,497	3,857	3,869	4,124	4,10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4.12.12.
 -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이상 노인 1명당 연 50만원 공제 신설
 - 2001.12.31.
 -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으로 공제액 상향



- 2003.12.30.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 연 100만원 추가공제를 유지하되,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150만원으로 공제액 상향
- 2008.12.26.
 - 경로우대자 연령기준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1인당 소득 공제액을 연 100만원으로 설정



거. 비과세종합저축(舊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 비과세)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 신설연월일: 2000.10.2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노인·장애인 등의 5천만원 이하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 일몰기한: 2019.12.31.까지
- 수혜자: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 예산분류: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89)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비과세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득세	776	595	770	940	1,175	n/a	n/a	n/a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n/a	3,992	4,290	4,434	4,100	3,647	3,367	3,484

주: 2007~2010년의 경우,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 다수의 금융상품을 합산하여 조세지출액을 집계하여, 개별 항목에 대한 감면액 규모 미발표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0.10.21.
 - 60세 이상의 노인·장애인등의 2천만원 이하 저축(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 2004.7.26.
 - 생계형저축 한도를 3천만원으로 인상



- 2006.12.30.
 - 생계형저축 비과세에 대한 일몰을 설정(~2008년 12월 31일 가입)
- 2008.12.26.
 - 일몰 연장(~2011년 12월 31일 가입)
- 2011.12.31.
 - 일몰 연장(~2014년 12월 31일 가입)
- 2014.12.23.
 - 종전 “생계형저축”의 명칭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하고, 일몰 연장(~2019년 12월 31일 가입)
 - 비과세저축 한도를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로 상향 조정



너. 장애인 추가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신설연월일: 1994.12.12.
- 감면내용
 - 주요내용: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는 종합소득자
- 예산분류: 사회복지 - 취약계층지원(82)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소득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득세	343	587	717	665	1,563	2,678	3,196	3,412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3,227	2,814	2,390	2,461	2,557	2,699	2,814	2,881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4.12.12.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연 50만원 공제 신설
 - 2001.12.31.
 -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100만원으로 공제액 상향
 - 2004.12.31.
 -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200만원으로 공제액 상향



더.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

■ 감면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제5항

■ 신설연월일: 1994.12.12.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1,8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동 금액과 조특법상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한도
 **동 금액, 조특법상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의 공제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한도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는 종합소득자

■ 예산분류: 사회복지 - 노동(86)

■ 감면방법: 직접감면(직접세) — 소득공제

■ 감면세목: 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득세	1,208	1,134	1,538	2,225	2,687	3,487	4,686	3,25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소득세	2,732	2,362	2,392	2,251	2,320	2,498	2,946	3,15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4.12.12.
 -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저축 불입액,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당해 상환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이전까지 무주택근로자에 대해 연 100만원을 공제하던 방식에서,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 및 차입금 상환 정도에 따라 주택자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

- 1999.8.31.
 - 공제한도를 연 180만원으로 상향조정
- 2000.10.23.
 - 무주택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
 - 종전의 두 소득공제 항목(무주택 또는 1주택자의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과의 합계액에 대해 300만원 한도 설정
- 2002.12.18.
 - 공제한도를 연 600만원으로 상향조정
(주택마련저축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합계액의 공제 한도는 300만원)
- 2003.12.30.
 - 공제한도를 연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소득자도 포함
- 2005.12.31.
 -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로 한정
- 2007.12.31.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로 이관
- 2009.2.4.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한도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
- 2012.1.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인 경우 1,500만원, 그 외는 500만원으로 한도 차등 적용
- 2014.1.1.
 -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세대원까지 확대
- 2014.12.23.
 -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300~1,800만원으로 한도 차등 적용

3. 법인세

가. R&D비용 세액공제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신설연월일: 2000.12.29.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에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율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당기분 R&D비용의 20~30*% 공제
(중소기업은 30%)
 - *매출액 대비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액 비중×일정배수(시행령)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①, ② 방식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 ① 당기분: 당해연도 지출액 × 1~3%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 ② 증가분: 직전 연도지출액 초과분 × 30% (중소기업 50%)
 - 일몰기한: 없음
(단,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 수혜자: 내국인
- 예산분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산업진흥, 고도화(114)
- 감면방법: 직접세 감면 - 세액공제
- 감면세목: 법인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법인세, 소득세	6,867	11,597	9,444	9,782	9,478	14,080	16,460	15,53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법인세, 소득세	18,571	23,341	25,567	28,850	27,860	28,158	20,802	21,404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7.12.31
 - 대기업: 증가분 40%(위탁분 50%), 당기분 3~6% 중 선택
- 2008.12.26
 - 일몰 폐지, 제도 영구화
 - 중소기업: 증가분 50%, 당기분 25% 중 선택
- 2010.1.1
 -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부문 도입: 당기분 대기업 20%, 중소기업 30%
- 2010.12.27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4년 후 3년간 15%, 이후 2년간 10%
- 2013.1.1.
 - 2015.12.31.까지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일몰연장
 - 당기분 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8%)
- 2014.1.1
 - 대기업 당기분 공제 한도 축소: 3~6% → 3~4%('14년 이후)
- 2014.12.23
 - 대기업 당기분 공제 한도 축소: 3~4% → 2~3%('15년 이후)
- 2015.12.15
 - 2018.12.31.까지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 일몰연장
- 2016.12.20
 - 대기업 일반 R&D비용 세액공제율 인하(당기분방식)
: 2~3%(기본 2%, 추가 1%) → 1~3%(기본 1%, 추가 2%)
 - 대기업 일반 R&D비용 세액공제율 인하(증가분방식)
: 40% → 30%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기존 19개 분야(신성장동력 12개, 원천기술 7개)의 기술을 11개 신산업분야 중심으로 조정·확대
 - 대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공제율 인상
: 20% → 20~30%

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신설연월일: 1993.12.3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상당액을 감면
- 감면을

감면업종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수도권외	수도권	수도권외
도소매업, 의료업	10%		—	5%
도소매업, 의료업 외	20%	30%	—	15%
지식기반사업			10%	—

* 해당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성실사업자의 경우, 해당 감면비율에 110% 적용

- 일몰기한: 2017.12.31.까지

■ 수혜자: 중소기업

■ 예산분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산업진흥, 고도화(114)

■ 감면방법: 직접세 감면 — 세액감면

■ 감면세목: 법인세 · 종합소득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법인세 소득세	7,234	9,094	9,356	4,914	9,003	10,215	12,239	12,793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법인세 소득세	11,978	10,953	12,829	12,640	13,812	16,090	18,205	19,19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3.12.30
 - 인센티브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을 하향조정
 - 도소매업, 의료업 등: 10% → 5%,
 - 수도권내 소기업: 20% → 10%, 수도권외 중소기업: 30% → 15%
- 2004.12.31
 - 경기침체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감면을 이전 수준으로 상향조정
- ○ 2009.1.1. ~ 2014.12.23
 - 대상업종 추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사업, 인력 공급 및 고용알선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무형재산 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등
- 2014.12.23
 - 주택임대관리업 감면 추가
 - 2017.12.31.까지 일몰연장
- 2015.12.15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종 감면 추가
- 2016.12.20
 - 기존 의료업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던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 감면 추가 (단,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 비율이 80%이상이고,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임업 감면 추가
 - 해당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성실사업자의 경우, 해당 감면비율에 110% 적용



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舊임시투자세액공제)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신설연월일: 1981.12.3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내국인이 신규투자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단,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적용
 - 일몰기한: 2017.12.31.까지
- 수혜자: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내국인
- 예산분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산업진흥, 고도화(114)
- 감면방법: 직접세 감면 - 세액공제
- 감면세목: 법인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법인세	6,528	13,019	18,134	25,439	20,681	18,247	21,148	20,032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법인세	17,700	27,371	21,243	17,727	11,349	8,954	8,580	8,721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10.12.27.
 - 임투공제율 하향조정(수도권밖 기준 7% → 5%), 고투공제 신설(1%)
 - 2011.12.31.
 - 임투공제의 고투공제 전환
: (일반기업) 기본 4% + 추가 2% (중소기업) 기본 4% + 추가 3%



- 2013.1.1.
 - 대기업 기본공제율 하향조정(4% → 3%)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 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기본공제를 허용
- 2013.8.13.
 - 대기업 기본공제율 하향조정(3% → 2%), 단 중견기업 기본공제율은 3% 유지
- 2014.12.23.
 - 2017.12.31.까지 일몰 연장
 - 기본공제: 대기업 폐지(2% → 0%),
중견기업 공제율 하향조정(3% → 2%),
 - 추가공제: 대기업 3% 유지, 중소 및 중견기업 1%p 인상(3% → 4%), 서비스업/지방투자 추가공제율 1%p 인상(대기업 최대 5%, 중소/중견기업 최대 6%)
- 2016.12.20.
 - 중소기업의 추가공제 한도 상향조정
 - ① 산업수요맞춤형고교 졸업생 신규채용 1인당 : 2,000만원 → 2,500만원
 - ② 청년·장애인·60세이상 신규채용 1인당 : 1,500만원 → 2,000만원
 - ③ 상시근로자 증가분(①, ② 제외) 1인당 : 1,000만원 → 1,500만원
- 2017.4.18.
 - 2017년 투자분에 한해 추가공제율 인상
 - : 중소기업 2%p 인상(4~6% → 6~8%),
 - 중견기업 1%p 인상(4~6% → 5~7%), 대기업 현행 유지(3~5%)



라.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 감면근거: 법인세법 제24조
- 신설연월일: 1998.12.28.
- 감면내용
 - 주요내용: GDP 대비 기부금총액 비율 2.0% 달성 등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 공제율
 -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의 50%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10%범위내에서 손금산입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복지 · 문화 · 교육 · 종교 등 관련단체 및 기부 법인
- 예산분류: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89)
- 감면방법: 직접세 감면 — 기타(손금산입)
- 감면세목: 법인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법인세	3,551	4,083	4,530	5,295	5,390	6,670	6,540	6,39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법인세	6,080	8,421	8,512	9,861	6,944	4,917	5,930	6,215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9.12.31
 -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3년→5년
- 2010.12.30
 -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 소득금액의 5%내→10%내



- 2011.12.31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1년→3년), 공공교육기관 추가, 비영리 교육재단 지원 확대
- 2013.1.1
 - 사립학교인 전문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전공대학’을 대상에 추가
- 2014.1.1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추가,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3년→5년

※ 외국납부세액공제

■ 감면근거: 법인세법 제57조

- 법인세 이외에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도 외국 납부세액공제 허용

■ 신설연월일: 1971.12.28.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외국법인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세무조정 단계에서 손금산입
 - 직접외국납부세액: 해당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간접외국납부세액: 외국소재 자회사가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자국소재 모기업(내국법인)이 간접적으로 납부한 세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모기업(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분율 · 상장여부 · 지주회사 여부 등에 따라 30%~100% 과세면제(익금불산입). 다만, 손회사는 적용배제
- 공제율
 - 직접외국납부세액:

$$\frac{\text{국외원천소득} - \text{국외원천소득중 기재령이 정하는 금액}}{\text{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 간접외국납부세액:

$$\text{법인세액(해외소재 자회사)} \times \frac{\text{수입배당금액(모기업)}}{\text{소득금액(자회사)} - \text{법인세액(자회사)}}$$
- 법인세 최저한세제도 미적용 항목
 - 기업의 실효세율(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중)이 최저한세율(중소기업 7%, 대기업 10~17%)보다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일몰기한: 없음
- 이월공제: 5년 동안 가능

■ 수혜자: 해외진출 법인

■ 감면방법: 직접세 감면 — 세액공제



■ 감면세목: 법인세

■ 연도별 감면세액(국세통계연보 기준)

(단위: 억원 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법인세	6,884	9,455	10,807	14,628	15,960	25,306	26,044	27,856	39,467
기업수	693	839	922	1,035	1,200	1,315	1,369	1,367	1,524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8-3-2)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71.12.28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도입(당시 「법인세법」 제24조의3)
- 1995.12.29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해외자회사 지분 20% 이상 보유 내국법인) 신설
- 1998.12.28
 - 법인세법 전부개정(현재의 「법인세법」 제57조로 이관)
- 2007.12.31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외 손회사 추가(50% 공제)
- 2009.12.31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자회사 및 국외손회사 지분을 요건 완화
(20%이상 → 10%이상)
- 2010.12.30
 -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50%)을 조세조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100% 세액공제
- 2014.2.21.(시행령 제94조)
 - 모회사 조지분율 요건 강화(10% 이상 → 25%이상)
 - 국외손회사 적용 제외
- 2014.12.23.
 - 2015년부터 법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법인세법」 제56조)가 시행
되었으나, 동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미적용

4. 부가가치세 등

가. 농수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감면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 신설연월일: 1976.12.3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 가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공제율
 - 음식점업: 과세유통장소의 경영자 - 면세농산물가액의 104분의 4
 - 개인사업자 - 108분의 8, 법인사업자 - 106분의 6
 - 제조업: 면세농산물가액의 104분의 4
 - 그 외: 면세 농산물가액의 102분의 2
 - 공제한도
 - 개인사업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공제율× 50%
 - 법인사업자: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공제율× 30%
 - 일몰기한 없음(단, 공제한도를 추가적으로 완화(35%)해주는 규정은 2018.12.31.까지)
- 수혜자: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창출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예산분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산업진흥, 고도화(114)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 기타(매입세액공제 특례)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부가가치세	20,691	22,490	20,550	21,990	24,409	25,17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3.12.31.
 - 당초 동 법률제정시 제조업자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
- 의제매입세입공제는 공제율을 중심으로 14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개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

연도	1977.3.	1988.7.	2000.3.	2010.3.	2013.2.
공제율	13/113	국내생산 5/105 수입농산물 3/105	일반업종 3/103 음식업 5/105	일반업종 2/102 음식업 3/103 (과세유흥 4/104)	일반업종 2/102 음식업 -법인6/106, - 개인8/108 (과세유흥 및, 중소제조업 4/10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14.1.1.
 - 공제한도 설정(부당공제 방지목적)
 - 공제한도 매출액(공급 과세표준) 30%. 개인의 경우 매출액 2억원 이하 50%이며, 2억원 초과 40%.
(단,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1억원 이하 60%, 1~2억원 55%, 2억원 초과 45%를 2015.12.31.까지 적용)
- 2017.2.7. 시행령 개정
 - 법인사업자 및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한도특례(법인 35%, 개인 45~60%)의 적용기한을 2018.12.31.로 2년 연장



나.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부가세 영세율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제6호
- 신설연월일: 1988.12.26.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비료·농약·사료 등 농민, 어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어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
 - 일몰기한: 2017.12.31.까지
- 수혜자: 농업·축산업·임업·어업종사자
- 예산분류: 농림수산 - 농업, 농촌(101)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완전면세)
-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부가가치세	7,882	7,475	8,763	10,292	11,606	13,627	15,198	15,81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부가가치세	14,117	14,117	14,136	13,155	15,717	14,514	14,933	15,76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2.12.8.
 - 임업용 기자재까지 확대
 - 1994.12.22.
 - 축산용 기자재까지 확대
 - 2004.12.31.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자재까지 확대



다. 신용카드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 감면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신설연월일: 1993.12.31.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6%)
 - 그 외: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
 - 공제한도: 연 500만원
 - 일몰기한: 없음(단, 추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항목은 2018.12.31.까지)
- 수혜자: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예산분류: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산업진흥, 고도화(114)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공제
-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부가가치세	7,546	7,748	5,435	4,991	5,893	6,992	8,451	10,03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부가가치세	12,325	13,831	14,405	13,667	13,888	14,188	15,883	16,273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95.12.29.
 - 공제율을 5%에서 1%로 하향조정
- 1998.12.28.
 - 연간 300만원 한도설정
- 1999.12.28.
 - 법인사업자 제외
 - 공제율(2%) 및 한도액(500만원)의 상향조정
- 2003.12.30.
 - 신용카드 등에 현금영수증 포함
 - 공제율 1%로 하향조정
- 2004.12.31.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1.5%로 상향조정
- 2007.12.31.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2%로 상향조정
- 2015.12.15.
 - 일정 매출액(10억원, 시행령 사항)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는 공제적용 대상에서 제외



라.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 **신설연월일:** 1971.12.29.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
 - 일몰기한: 2018.12.31.까지
- **수혜자:** 농민, 임업인, 어민
- **예산분류:** 농림수산 - 농업, 농촌(101)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면제
-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부가가치세 등	12,083	13,200	14,488	14,487	17,779	18,976	14,801	15,287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부가가치세 등	15,406	15,349	15,237	15,065	14,523	13,152	9,734	9,022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89.12.30.
 - 종전 연근해어업용 선박 등에 한정되어 적용되었던 것을 농업용까지 확대
 - 2002.12.11.
 - 임업용까지 확대

마. 방위산업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신설연월일: 1977.12.19.
- 감면내용
 - 주요내용: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해 지정된 중점관리 대상자가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일몰기한: 없음
- 수혜자: 방위산업체 등
- 예산분류: 국방 - 방위력개선(43)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완전면세)
-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부가가치세	2,938	2,175	2,697	2,266	1,956	2,111	2,354	2,76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부가가치세	2,322	2,055	2,192	2,131	6,297	6,158	6,523	6,910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82. 12.21.
 - 경찰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군수물자 포함
 - 1983. 12.31.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정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군수 물자에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로 개정



- 1989.12.30.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까지 확대



바.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
- 신설연월일: 1992.12.8.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09분의 9
 - 재활용 폐자원의 공제한도
 - 폐자원매출과세표준×80%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폐자원 매입가액(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
 - 일몰기한: 2018.12.31까지
- 수혜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수집자
- 예산분류: 환경 - 폐기물(71)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 기타(매입세액공제 특례)
-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부가가치세	3,045	3,497	4,464	5,018	5,846	5,243	5,496	5,18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부가가치세	6,090	6,732	6,653	6,494	6,547	6,135	5,730	5,737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5.7.13.
 -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품에 대한 일몰기한을 삭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법률에서 규정
 - 공제율: 재활용폐자원(108분의 8), 중고품(110분의 10)
- 2006.12.30.
 - 일몰신설: 2009.12.31.까지
 -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 및 공제한도 설정
 - : 취득가액의 8/108 → 6/106
 - : 공급가액의 80%(2007말까지 90%) 한도 내에서 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허용
- 2010.1.1.
 - 중고자동차: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0/110
 - : 2011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9/109
- 2014.1.1.
 - 일몰연장: 2013.12.31. → 2016.12.31
 -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105분의 5로 함)
 - 중고자동차: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가액의 109분의 9
- 2014.12.23.
 - 중고자동차(9/109) 일몰연장: 2014.12.31. → 2016.12.31.
- 2016년 3월,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문기관에서 평가
- 2016.12.20.
 - 일몰연장: 2016.12.31. → 2018.12.31.



사.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 신설연월일: 1998.12.28.
- 감면내용
 - 주요내용: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공사 등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일몰기한: 2018.12.31까지
- 수혜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 사업시행자
- 예산분류: 교통 및 물류 - 도시철도(123)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완전면세)
-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부가가치세	1,607	3,309	2,784	2,010	1,504	2,531	1,742	1,511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부가가치세	2,446	2,752	2,358	2,148	2,616	2,734	5,967	3,948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4.12.31.
 - 적용대상에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추가
 - 2015.12.15.
 - 일몰연장: 2015.12.31. → 2018.12.31.



아.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감면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
- 신설연월일: 1976.12.22.
- 감면내용
 - 주요내용: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제
 - 일몰기한: 2018.12.31까지
- 수혜자: 장애인, 병원, 택시사업자, 렌터카사업자, 기업연구소
- 예산분류: 사회복지 - 사회복지일반(89)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 감면세목: 개별소비세, 교육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개별소비세 등	340	336	355	427	1,582	544	691	47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개별소비세등	2,720	2,251	2,684	2,257	2,578	2,315	1,565	2,279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1988.12.26.
 - 감면대상에 환자수송 이외에 영업용, 장애인(구입)용 추가
 - 2001.12.15.
 - 감면대상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추가
 - 2010.1.1.
 - 감면대상에 기업연구소의 시험·연구용 추가



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감면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 신설연월일: 1995.8.4.
- 감면내용
 - 주요내용: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5% 경감
 - 일몰기한: 2018.12.31까지
- 수혜자: 회사택시 기사 등
- 예산분류: 교통 및 물류 - 물류 등 기타(126)
- 감면방법: 간접세 감면 - 부가가치세 감면
- 감면세목: 부가가치세
- 연도별 감면세액

(단위: 억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부가가치세	1,035	1,859	1,266	759	767	782	694	1,29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추정	2017 추정
부가가치세	1,411	1,524	1,513	1,551	1,657	1,875	1,905	1,897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주요 개정연혁
 - 2009.6.9.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 50% → 90%
 - 2014.12.23.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 : 90% → 95%
 - 2015.12.15.
 - 일몰연장: 2015.12.31. → 2018.12.31.



Ⅲ. 최근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1. 최근동향	93
2. 주요 논의 사항	94



Ⅲ. 최근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1. 최근동향

- 최근 들어 행정부가 발표한 조세지출의 정비효과가 축소되는 가운데, 동 효과에는 조세지원 확대 효과 등이 제외됨에 따라 이를 통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총 조세지출의 변동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
 - 행정부의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6년 조세지출 정비에 따른 세수효과는 2017~2021년 동안 총 960억원으로, 과거 행정부가 발표한 '2012~2015년 세법개정안'의 평균 정비효과 1조 1,893억원의 1/10 수준에 불과
 - 이는 조세지출 항목 신설(5개 -443억원), 폐지(4개 26억원), 축소 (3개 1,377억원)만을 반영하여 「2016년 세법개정안」의 정비현황을 파악한 것임
- 세법개정안에 따른 정비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설, 폐지, 축소 외에 조세지원 확대 개정 안 등을 반영할 필요
 - NABO가 조세지출 확대* 개정안 등을 반영하여 정비효과를 재추계한 결과, 2016년 조세지출 정비효과는 행정부가 발표한 960억원에서 -2,454억원으로 축소
 -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근로장려금 산정액 인상” 등 총 58개

[표 14] 2016년 조세지출 정비의 세수효과 비교¹⁾: 행정부 vs. NABO

[단위: 억원]

		행정부 추계 (A)	NABO 재추계 ²⁾ (B)	차이 (B-A)
신설 ①		-443	-443	0
폐지 ②		26	26	0
제도변경	축소 ③	1,377	1,377	0
	확대 ④	—	-3,414	-3,414
합계(①+②+③+④)		960	-2,454	-3,414

주: 1) 전년대비 기준으로 향후 5년간('17~'21년) 세수효과의 합계금액임

2) 추정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비용추계서'를 활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16.10, p.22 재인용



2. 주요 논의 사항

가.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예산분류기준에 따라 조세지출금액만을 집계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재정지출 금액을 반영하지 않아, 종합적인 지출현황 파악이 곤란**
 - 조세지출만을 고려한 경우 2017년 기준 산업·중소기업·에너지(28.8%), 사회복지(27.9%), 농림수산(13.4%) 분야의 비중이 크나, 재정지출을 함께 고려한 총 재정지출의 경우 사회복지(29.7%), 교육(13.4%), 산업·중소기업·에너지(6.1%)의 순으로 지출비중이 큼
- **특히, 현행 조세지출예산서에서는 개별 조세지출 항목에 유사한 재정지출사업을 매칭할 수 없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복성 평가 등이 곤란**
 - 예산분류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에 속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지출로, 현행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서는 유사 재정사업의 종류·지원규모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 소관부처에서 작성하는 ‘조세지출평가서’ 및 ‘조세지출평가계획서’에는 조세지출에 대응되는 재정사업의 기초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으나, 형식적 수준에 그침
- **조세지출예산서의 주요 조세지출 및 일몰도래 항목 등에 대해 정책목적이 유사한 재정지출의 단위사업별 중복여부, 예산규모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에 관련 내용을 보완할 필요**
 - 개별 조세지출 항목과 재정지출사업의 정책목적·수혜대상 등 중복성 검토시 제도 간 상호보완성이나 대체가능성 등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나. 조세지출의 일몰규정 제도화

- 조세지출 심층평가가 일몰도래 항목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지출 중 일몰 없는 항목의 비중이 상당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 및 관리에 미비점(loophole)이 발생
 - 2017년 조세지출제도 243개 중 79개 항목(32.5%)이 일몰규정 없이 영구화 되어 있는데, 전체 조세지출액 36.1조원¹⁵⁾ 중 이들의 조세지출액이 19.0조원(52.0%)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나 관리가 대체로 일몰도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몰규정이 없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 재정지출 사업의 엄격한 관리제도 준용의 필요성, 조세지출의 폐지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예외 없이 일몰 규정을 도입하고 심도 있는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
 - 재정지출의 경우 매년 예산 또는 결산 시에 사업별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폐지 및 조정이 이루어지나, 조세지출은 제도 도입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반면 평가나 정비가 상대적으로 미흡
 - 현재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가 일몰이 도래한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평가 수행 및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도정비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일몰 규정 도입을 검토할 필요
 - 특히 근로소득공제나 기본공제 등 '담세력'(ability to pay) 측정에 관련된 일반적 조세체계상의 감면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 성격에 감안하여 일몰규정 도입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15) 경과규정 제외



다. 조세특례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 필요

- 2015년부터 조세특례 성과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몰도래 주요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심층평가의 경우 비과세·감면 정비가 미미
 - 2015년 심층평가 대상 항목 총 14건 중 12건(연장율 85.7%), 2016년 6건 중 6건(연장율 100.0%) 연장
 - 조세특례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연구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주로 일몰연장의 종합결론을 제시
 -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효과성 분석결과가 유의하지 않음에도 타당성에 근거하여 일몰연장의 종합결론을 제시
 - 또한 일몰연장의 근거가 미흡한 경우에도 세법개정안에 일몰연장으로 반영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 이용분공제 등은 조세특례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제도의 일몰연장을 제안
- 부문별로 수행된 평가결과가 상이한 경우 이를 종합하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비과세·감면 정비원칙 준수를 통해 조세특례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대부분의 조세특례는 시장실패와 외부성 교정, 경기대응 필요 등 정부개입의 타당성이 존재하므로 제도의 경제적 효과성 검증이 특히 중요
 - 평가제도 도입의 취지에 근거하여 조세특례 성과평가 결과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조세지출 정비 원칙을 준수할 필요

라. 지방세 비과세·감면 관리 강화

- 2015년 기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총 13.0조원으로, 이는 같은 해 국내 비과세·감면액 35.9조원의 36.2%에 해당
 -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근거
 - 2015년의 경우 「지방세법」상 비과세·감면이 6.8조원(전체의 52.5%),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이 5.6조원(42.8%) 등을 차지

[표 15] 지방세 비과세·감면 추이: 근거 법률별, 2000~2015년

[단위: 억원, %]

연도	합계	「지방세법」 ¹⁾	「지특법」	「조특법」	기타	지방정부 (조례)
2000	23,436	7,737	6,019	3,429	18	6,233
(전체대비)	(100.0)	(33.0)	(25.7)	(14.6)	(0.1)	(26.6)
2011	173,320	39,850	93,285 ²⁾	13,531	17,476 ³⁾	9,178
2012	154,286	56,977	82,678	12,774	1,041	815
2013	160,759	55,014	90,805	13,278	774	887
2014	130,029	60,774	54,762	12,989	423	1,088
2015	130,012	68,256	55,605	4,528	282	1,452
(전체대비)	(100.0)	(52.5)	(42.8)	(3.5)	(0.2)	(1.0)
연평균 증가율	12.1	15.6	16.0	1.9	20.1	-9.3

주: 1) 2000 년도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액 규모는 비과세 및 감면액을 합한 것임. 2011년 이후 「지방세법」에 규정되었던 지방세 감면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음

2)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전국 표준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도 동 법으로 이관됨

3) 동 금액에는 「지방세법」 제54조에 규정된 담배소비세 과세면제(수출, 국군·전투경찰 사용분 등)에 따른 감면액(1조 3,380억원)이 포함되었다가 이후 「지방세법」 비과세 항목으로 이동

1. ()는 전체 감면액 대비 각 항목의 비중값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현재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관리는 행정자치부 「지방세통계연감」¹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별 감면 항목별 비과세·감면 실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항목 일부에 한해 자료를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음
 - 「2016 지방세통계연감」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조문 총 198개 중 108개에 한하여 개별 감면 항목의 실적을 집계
 - 개별 감면 항목에 대한 2015년 감면 실적은 총 5.5조원으로 전체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 13.0조원의 42.8%에 불과

[표 16]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개별 항목별 감면 현황: 2015년

(단위: 억원)

구 분	건수	금액
a. 통계연감 관리 조문(제4조~제92조의3, 부칙)	108	55,605
b. 통계연감 누락 조문(제93조~제167의2조)	83	미집계
c. 「지특법」상 감면 조문 규정 합계(a+b)	198	55,605

주: 감면 조문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67조의2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임

자료: 행정부, 「2016 지방세통계연감」, 2016;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조세지출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관리가 실시될 필요
 - 2015년 기준 지방세 감면율은 15.5%로 같은 해 국세감면율 14.1% 보다 높은 수준
 - 국세의 경우 비과세·감면 현황은 “조세지출예산서”로 작성하여 예산안 부속서류로서 국회되고, 조세특례에 대한 자체평가 등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 중
 - 지방세 비과세·감면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 현황 집계는 일부 항목에 한하여 「지방세통계연감」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16)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을 담은 통계 자료(「지방세기본법」 제144조 근거)로서,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실적이 위주이며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보충적 통계 자료 수준으로 제시

IV. 일몰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1. 2017년 일몰도래 항목	101
2. 2018년 일몰도래 항목	103
3. 2019년 일몰도래 항목	106
4. 일몰규정 없는 항목	107

IV. 일몰연도별 조세지출 현황

1. 2017년 일몰도래 항목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1977	98	94	99
2.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977	1,58	1,28	0,34
3.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982	116	174	133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982	8,954	8,580	8,721
5.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1983	16,090	18,205	19,190
6.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986	0,16	1,14	1,56
7.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87	56	43	46
8. 농·축산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989	14,514	14,933	16,273
9. 조합법인(농협·수협·신협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990	1,616	2,360	2,496
10.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990	467	476	500
1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 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996	16	28	29
12.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1997	1,787	4,675	2,437
1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997	66	134	125
14.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1997	43	52	55
15. 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97	53	46	48
16.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997	—	—	—
17.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1998	추정근단	추정근단	추정근단
18.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1999	2,27	1,26	1,29
19.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등 감면	2000	1,436	4,134	6,545
20.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	2001	0,24	—	—
21.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1	추정근단	추정근단	추정근단
22. 제주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2002	300	83	157
23.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4	—	—	—
24.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2005	추정근단	추정근단	추정근단
2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2007	274	249	273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26.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9	41	45	48
27.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9	-	-	18
2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09	1,00	1,00	1,00
29.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	1,50	0,99	1,05
30.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1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31. 전기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2	-	-	-
3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2012	760	891	934
33.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2	28	13	14
34. 특성화고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3	0,01	0,01	0,01
35. 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3	-	-	-
36.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2014	-	-	-
37. 임대주택 부동산 투자회사의 현물 출자사 과세특례	2014	-	-	-
38.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과세특례	2014	0	0	0
39. 정비사업조합 취소에 따른 시공사 채권의 손금산입 신설	2014	-	-	-
4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배당소득증대세제)	2014	-	-	-
41.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4	-	-	-
42.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2014	0,73	-	0,24
4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14	-	183	192
44. 정규직근로자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2014	4	14	15
45. 청년고용증대세제	2015	신설	541	877
46. 해외주식 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2015	신설	-	-
47.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5	신설	-	-
48.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재무구조개선회계)	2015	신설	추정곤란	추정곤란
49.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2016	-	신설	-
5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016	-	신설	-
5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6	-	신설	-
52.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2016	-	신설	-
감면액 합계(총 52개)		46,727	55,959	58,719

주: 1)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6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2) 국회예산정책처는 조문 중 세부항목에 일몰이 규정된 조세지출은 이를 일몰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2018년 일몰도래 항목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1966	0.23	0.50	0.52
2.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1970	60	47	50
3.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972	13,152	9,734	9,022
4.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1976	7,666	7,205	7,467
5. 도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1977	17	9	9
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979	1,278	717	679
7.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980	2,734	5,967	33,948
8.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982	10.58	0.06	0.01
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982	1,430	1,527	1,002
10.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1982	188	139	146
11.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83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1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987	13,127	8,219	8,329
13.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87	28	56	59
14. 영동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1990	317	264	275
15.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1990	123	227	237
16.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90	-	-	7
17.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1991	383	478	396
18.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1993	6,135	5,730	5,737
19.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994	247	343	359
2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94	1,670	1,697	2,013
2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1994	14,188	15,883	16,273
2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994	28,158	20,802	21,404
23. 기술이전 및 취득액에 대한 과세특례	1994	14	2	9
2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994	1,509	1,464	1,120
25.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117조①2호의 가목, 3,5,16,23,24)	1997	예산서 미기재	예산서 미기재	예산서 미기재
26. 창업중소기업의 용자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1997	16	14	15
27.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등	1998	29	23	24
28.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따른 법인세 과세특례	1998	-	-	-
29.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998	-	-	-
30.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과세특례	1999	107	95	81
3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1999	17,889	19,383	18,891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32. 천연가스(CNG)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99	282	192	201
3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1	1,193	2,208	1,851
34.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1	—	—	—
35.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2001	38	31	32
36.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2001	512	494	517
37.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2002	—	—	—
3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2002	—	—	—
39.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002	—	—	—
40. 제주투자진흥·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2002	59	22	24
4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2	46	15	16
4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2005	1,875	1,905	1,897
43.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5	58	43	54
4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약업, 의료기기)	2006	—	—	—
45.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2006	0.27	12	12
46.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2006	—	—	—
47.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2007	41	34	22
48.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2007	8	9	9
49.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2008	566	558	592
50.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2008	173	243	254
51.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08	147	64	67
5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2008	305	329	354
53. 환경보전시설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8	680	444	448
54.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08	0.54	0.31	0.16
55.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008	추정곤란	추정곤란	추정곤란
56.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8	53	23	22
57.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09	346	235	259
58. 내국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2009	—	—	—
59.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9	1.45	1.69	1.82
6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9	—	—	—
61.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2010	6	9	8
62. 금융기관의 신용회복 목적회사 출자·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2010	—	—	—
6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 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0	0.05	0.05	0.08
64. 금융중심지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2010	—	—	—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65.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010	426	513	539
6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2011	4	6	6
67.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 특례	2012	—	—	—
6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012	1,667	1,534	1,579
69.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2012	1.58	1.67	2.24
70. 재기중소기업인의 채납액 등 과세특례	2013	—	—	—
71.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2013	3.36	0.28	0.90
72. 금·구리 스크랩사업자 수입액 증가 세액공제	2014	0.69	3.48	3.62
73.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014	—	—	—
74.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14	0.02	0.02	0.03
7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과세특례	2014	—	2.51	2.68
76.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2014	23	5	5
77.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예산서 없음	2014	—	—	—
7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 감면	2014	0.25	—	—
79.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14	추정공란	추정공란	추정공란
80.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과세특례	2015	신설	—	79
81. 내국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2015	신설	추정공란	추정공란
82.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2015	—	—	—
8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2015	신설	—	1,100
8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2015	신설	—	—
8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16 신설)	2016	신설	신설	—
86. 기업형입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추정공란	추정공란
87.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2016	—	—	—
88.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2016	예산서 미기재	예산서 미기재	예산서 미기재
89.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추정공란	추정공란
90.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추정공란	추정공란
91.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추정공란	추정공란
92.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2016	신설	추정공란	추정공란
93.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2016	신설	추정공란	추정공란
94.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2016	예산서 미기재	예산서 미기재	예산서 미기재
감면액 합계(총 94개)		118,992	108,964	107,511

주: 1)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6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2) 국회예산정책처는 조문 중 세부항목에 일몰이 규정된 조세지출은 이를 일몰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2019년 일몰도래 항목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1.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1970	965	41	43
2. 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1983	732	717	766
3.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00	3,647	4,221	3,484
4. 의약품 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08	136	159	161
5.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8	43	69	73
6.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2009	0.36	0.61	0.64
7.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2011	2.81	3.19	2.14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시 세액공제	2011	39	80	84
9.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12	0.05	0.17	0.08
1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2012	34	113	119
11.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2014	7	12	12
1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2014	예산서 미기재	예산서 미기재	예산서 미기재
1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16신설)	2016		신설	—
14.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2016		신설	—
15.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자 과세특례	2016		신설	—
16. 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2016		신설	—
17.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2016		신설	—
감면액 합계(총 17개)		5,606	4,562	4,745

주: 1)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6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2) 국회예산정책처는 조문 중 세부항목에 일몰이 규정된 조세지출은 이를 일몰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일몰규정 없는 항목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1.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 제공 주류에 대한 주세 등 면제	1966	2,6	3,2	3,3
2. 전담 임대소득 비과세	1968	276	294	306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비과세	1968	1,629	1,620	1,709
4.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1970	60	46	48
5. 대학교원, 연구기관 종사자가 받는 연구보조비·활동비 비과세	1971	638	762	659
6. 공공자관 도입에 따른 세액감면	1973	—	—	—
7.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1975	532	502	493
8. 장애인 추가공제	1975	2,699	2,814	2,881
9.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1977	24,112	25,210	24,752
10.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	1977	추정근란	추정근란	추정근란
11. 교육·과학, 문화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77	593	376	394
1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1977	21,990	24,409	25,172
13.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 승용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977	2,315	1,565	2,279
14. 의료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1978	8,852	9,129	9,171
15. 교육비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1978	11,531	11,289	11,312
16. 방위산업물자 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978	6,158	6,523	6,910
17. 방송·교육용 등 고급사진기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975	—	—	—
18. 국민주택 및 동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80	추정근란	추정근란	추정근란
19.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1981	262	184	197
20. 외국인대상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982	예산서 미기재	예산서 미기재	예산서 미기재
21.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1982	7,031	7,703	7,347
22.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1989	3,869	4,124	4,103
23.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인한 급여 비과세	1990	268	244	261
24. 중소기업 통합·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990	109	92	52
25. 장기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	1991	941	745	771
26. 부녀자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1991	453	438	470
27.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1992	811	573	599
28. 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	1994	4,917	5,930	6,215
29. 무주택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소득 특별공제	1995	2,498	2,946	3,152
3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비과세	1995	8,154	8,858	9,023
31.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1997	2	1	1
32. 기업상속공제	1997	344	106	230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33. 영농상속공제	1997	69	43	46
34.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1998	198	261	279
35.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1999	5	0	2.7
36.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1999	348	45	47
3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999	1,865	1,369	1,161
38. 외국인투자기업 자본재도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1999	416	257	266
39. 기장세액공제	1999	540	631	553
40. 소액담배·독수제초용담배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1999	10	5	5
41. 희귀병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000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42. 골프선수의 골프장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2000	34	46	41
43. 폐광카지노에 대한 개별소비세 저율과세 및 면제	2000	1,802	1,553	1,634
44. 항공기, 반도체 제조/수리용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2001	1,017	859	778
45.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2001	204	140	144
46. 장애인용품 관세감면	2001	220	163	168
47.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2001	16,150	17,094	18,041
48. 연금계좌세액공제	2001	9,850	10,939	10,859
49.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2001	598	509	539
50.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2002	1,588	3,530	3,714
51. 제주도 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2002	1,384	1,115	1,214
5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2003	958	974	983
5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2004	672	736	651
5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6	523	422	448
5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06	8	26	25
56.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2007	0.38	0.47	0.50
57.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2007	1,135	1,653	1,712
58. 근로장려금(ETC)	2007	10,625	11,000	12,452
59.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08	499	208	222
60.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2008	-	-	-
61. 동거주택상속공제	2009	95	139	139
62. 비거주자등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2009	-	-	-
63.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2009	추정근관	추정근관	추정근관
64.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2010	-	-	-
65.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2010	0.04	0.04	-
66.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2010	-	-	-
67.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2011	1,012	1,052	1,111

(단위: 억원)

항목명	시행 연도	'15 실적	'16 전망	'17 전망
68.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2011	12	9	10
69.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11	추정근단	추정근단	추정근단
70.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2013	8	8	8
71. 한부모 추가공제	2013	67	69	74
72.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14	—	—	—
7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14	0,12	0,44	0,47
7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14	0,04	—	—
75. 월세 세액공제	2015	415	544	544
76. 자녀장려금(CTC)	2015	6,555	6,250	6,033
77. 자녀세액공제	2015	12,784	13,365	13,598
78.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 과세특례	2016	예산서 미기재	예산서 미기재	예산서 미기재
79. 기부장려금	2016	—	—	—
감면액 합계(총 79개)		182,713	191,501	196,013

주: 1)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16년 세법개정 결과 반영

2) 국회예산정책처는 조문 중 세부항목에 일몰이 규정된 조세지출은 이를 일몰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목수와 감면액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V. 조세특례평가 결과

1. 2015년 조세특례 사전 · 사후평가 결과 113
2. 2016년 조세특례 사전 · 사후평가 결과 116

V. 조세특례평가 결과

1. 2015년 조세특례 사전·사후평가 결과

가. 사전평가(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조세지출 항목	평가결과 요약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재정사업과 일부 중복되나, 정책적 필요성 높음 경제성 존재(B/C비율 ¹⁷⁾ 1.57) GINI계수 ¹⁸⁾ 소폭 개선	반영 (1)
2.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정책 일관성 및 사업목표 명확성 낮음 경제성 미흡(B/C비율 0.32) 형평성 개선효과 존재	미반영 (2)
3. 보훈 취업지원대상자 세제지원	기존 법령개정으로 정책목표 달성 가능 경제적 타당성 미흡(B/C비율 0.19) GINI계수 소폭 개선	

나. 사후평가(조세특례심층평가)

조세지출 항목	평가결과 요약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
1.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	타당성: 타 산업간 형평성, 개소세 도입목적 감안시 타당성 부족 효과성: 골프장 이용수요 분석결과 제한적 효과 존재	폐지 (2)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타당성: 활성화 정도를 볼 때 정착된 상태, 정책목적 달성 효과성: 납세협력비용 감소 등 효과 존재 (B/C 1.2~5.0)	

17) 편익비용비율(Benefit to Cost Ratio, B/C ratio)은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총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비율로서, 동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해당 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18)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로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인. 0은 완전평등을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로서, 지니계수가 클수록 소득분배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로 이해



조세지출 항목	평가결과 요약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
3. 농·수협 등 출자금·예탁금 과세특례	타당성: 일정 부분 타당하나, 고소득자에게 일부 혜택이 돌아가는 단점 효과성: 저축증진효과가 일부 있으며, 상호 금융기관 경영성과 개선효과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축소조정 (4)
4.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타당성: 수용토지 보상의 시장가치 근접에 따라, 보상이 현실화 부족분 보충을 위한 감면 필요성은 낮아짐 효과성: 양도소득에 대한 직접 감면은 해외 사례에서도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점진적 축소 제시	
5. R&D설비투자 세액공제	타당성: R&D 투자의 시장실패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타당 효과성: 설비투자에 대한 다양한 조세특례의 존재 및 공제율의 변화 등으로 인해 효과성 분석결과는 유의하지 않음	
6.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타당성: 신성장 분야 R&D 투자의 성격상 정부 지원은 타당하나, 일반 R&D와의 구분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 부족. 조세 지출보다 재정지출이 적정 효과성: 제도 활용도가 높지 않아 효과성을 단정하기 어려움	
7.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타당성: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타당 효과성: 설문조사 및 국제청 자료를 토대로 회귀 분석한 결과, 고용창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일몰연장 (8)
8.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타당성: 해외사례 및 외부효과 고려시 정부개입 타당성 인정 효과성: 지자체 재정부담완화, 민간투자부담 완화효과 존재	
9.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타당성: 요금규제로 파생된 자원배분 왜곡완화 감안시 정부개입 타당성 존재 효과성: 설문조사 결과 약한 소득재분배 효과 존재	
10.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타당성: 요금규제로 악화된 택시업계 수익성 및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개입 타당성 존재 효과성: 회귀분석 결과 영업이익 개선효과 존재, 지니계수 개선으로 소득재분배 효과 존재	

조세지출 항목	평가결과 요약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
1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타당성: 창업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창업 활성화 유도 측면에서 타당 효과성: 법인세 부담 감소로 인한 창업 활성화 효과 있음	
1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타당성: 생산성이 낮은 일부 청년구직자 등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취업 유인으로 작용(모든 청년구직자에게 효과적인 제도는 아님) 효과성: 설문조사 결과 취업유인효과 미미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중복할 수 없어 저소득구간 근로자가 불리	
13.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의 간접세 면제	타당성: 보조금 보다 조세지출 방식이 타당 효과성: 도서민 가격할인효과가 낮게 나타남. 도서민 수송실적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비유의	
14.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타당성 : 중소기업 투자의 긍정적인 외부효과 등을 감안할 때 타당 효과성: 단기 효과는 낮지만 장기적 효과 존재	



2. 2016년 조세특례 사전·사후평가 결과

가. 사전평가(조세특례예비타당성조사)

조세지출 항목	평가결과 요약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
1. 공동·위탁 R&D공제 우대	대기업 지원 성격에 해당, 정책적 타당성 낮음	미반영 (2)
2.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시장실패 교정의 정책성 인정 협력 기업간 기술 이전 등 조세유인 왜곡 수직적 형평성 악화	

나. 사후평가(조세특례심층평가)

조세지출 항목	평가결과 요약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타당성: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과표양 성화 목적은 타당. 단, 도입초기와 달리 추가적인 과표양성화 효과가 조세지 출금액에 비해 미미해진 상태 효과성: 제도 시행 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인원과 세수 증가, 카드 결제 일상화에 기여	일몰연장 (6)
2. 재활용폐자원 등 VAT 과세특례	타당성: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며, 논리적 타당성 존재 효과성: 생산유발 측면에서 효과성 존재, 재활용물과 가격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 없어, 조세특례의 폐자원 재활용 촉진의 증거 미흡	
3.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타당성: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에 비 해 세부담이 많아 우수 외국인력 유치 를 위해 타당 효과성: 직접적인 고급 외국인 인력 유입효과 는 없는 것으로 판단	
4.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타당성: 에너지효율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개 입 타당, 중소기업위주의 공제율 개 편은 적절 효과성: '11년 이후 공제율 감소는 투자 감소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거나 자료의 한계로 일반화하기 어려움	

조세지출 항목	평가결과 요약	세법개정안 반영 여부
5. 비영리법인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타당성: 가치제 공급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적절성은 인정되나, 비영리 법인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제도 운영방식에서 한계점을 내포함 효과성: 손금산입특례는 정책 목표인 고유목적사업 지출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동 제도의 장기간 존속에 따른 특례적용 대상과 비대상간의 형평성 문제, 동 제도의 오남용 문제 등 존재	
6.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타당성: 환경보호 측면에서 정부개입은 타당하지만 환경규제와 중복성 존재. 기업투자유인도 제한적 효과성: 일부 유해물질의 농도를 낮추지만 기업 시설투자를 유발한다고는 보기 어려움. 환경오염물질이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증거 확인 곤란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회예산정책처, 「알기쉬운 조세제도」, 2012
- _____,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 분석」, 2016.10
- _____, 「2016 조세의 이해와 쟁점 ⑦ 조세지출」, 2016.6
- _____, 「조세지출제도 국내의 동향 및 시사점」, 2015.10
- _____, 「조세특례평가 방법 연구」, 2016.11
- 기획재정부, 「201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2013.3.26
- _____,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2015.3
- _____, 「201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 2016.3.29
- 김명숙,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과 적정조세부담률의 모색」, 한국조세연구원, 1994.4
- 김종면, 「기준조세체계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재정포럼 제13권 제8호 통권 제146호, 2008.8. pp.6-18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조세지출보고서)」, 각 연도
- 임주영,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7.12
-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세제사 제2편 제3권: 지방세 · 재산과세 · 조세지원제도」, 2012.12
- Shannon, Harry A., "The Tax Expenditure Concept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 Comparison", 33 Tax Notes 201, 1986
- BMF(GER), Summary: 24th Subsidy Report of the Federal Government, 2013
- HRMC(UK), 「Tax and NICs receipts: information and analysis」, 2016.5
- OMB(USA),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17」, 2016
- OECD, 「Tax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0
- _____, 「Tax Expenditures: Recent Experiences」, 65, 1996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

8 조세지출

발간일	2017년 6월 1일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2070 · 3114)
인쇄처	원양산업(주) (tel 02 · 2263 · 926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 · 788 · 3778)

ISBN 978-89-6073-001-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